

KBIZ 중소기업중앙회

KEF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KBIZ 중소기업중앙회 · KEF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KBIZ 중소기업중앙회

KEF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 동 매뉴얼은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을 자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는데 참고자료로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발 간 사

중소기업은 국내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에 비해 재정적·인적 여건의 부족으로 안전에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워 높은 산업재해율을 차지할 정도로 안전보건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22.1.27부터 단계적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도 산재예방 중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현장은 여전히 법령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의무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경총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거나, 구축했다라도 외부 위탁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중소기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중앙회와 본 매뉴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매뉴얼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스스로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주요 의무 및 벌칙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중심으로 법 대응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수록하였으며, 동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사업장 진단 결과 및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았습니다. 사업장 진단에 도움을 주신 한국RMS(주)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안전관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서류양식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진 위험성평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였습니다.

본 매뉴얼을 통해 중소기업과 사업장 내 협력업체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되어 중대재해가 예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경총은 사업장의 안전경영활동 활성화와 안전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1. 12.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손 경 식

발 간 사

사회적 논란을 거듭했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불과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부분은 오너가 곧 대표이기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이 자칫 경영중단 또는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부담과 우려는 높은 반면, 현실적으로 재정적·인적 여건이 열악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준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동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사업장에서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본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에 대한 설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의무내용들을 세분화하여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수록하였으며, 중소기업에서 더욱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실제 현장사례와 필요한 서류양식들까지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애쓰시는 중소기업 임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본 매뉴얼이 재해없는 사업장, 안전한 중소기업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 12.
중소기업중앙회장
김 기 문



목 차

| | | | |
|--|----|---|-----|
| I. 서론 | 09 | III.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 27 |
| 1. 중소기업 안전관리 자율진단 필요성 | 11 | 1. 일반현황 | 29 |
| 2. 매뉴얼 구성 및 활용 시 기대효과 | 12 | 2.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 30 |
| II.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 | 13 |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제1항제1호) | 31 |
| 1. 중대재해란? | 15 |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제1항제2호) | 47 |
| 2.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적용범위 및 시기 | 16 | 다. 행정기관 명령 등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제1항제3호) | 47 |
| 가. 목적(법 제1조) | 16 |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 제4조제1항제4호) | 48 |
| 나. 적용 범위(법 제3조) | 16 | 마. 문서보관(시행령 보칙) | 50 |
| 다. 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 | 17 | IV. 사업장 안전관리 진단 사례 및 관리방안 | 51 |
| 3. 안전보건 확보의무 | 18 | 1. 안전관리 진단 총평 및 결과 요약 | 53 |
| 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 18 | 가. 안전관리 진단 개요 | 53 |
| 나.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법 제5조) | 20 | 나. 안전관리 진단 총평 | 53 |
| 4. 위반 시 벌칙 및 행정제재 | 22 | 다. 진단결과(요약) | 54 |
| 가. 벌칙(법 제6조) | 22 | 2.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항목별 진단 결과 및 개선방안 | 58 |
| 나. 안전보건교육 수강 명령(법 제8조) | 23 | 가. 진단 사업장 현황 | 58 |
| 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법 제13조) | 24 | 나. 체크리스트 항목별 안전관리 결과 및 개선방안 | 59 |
| 라.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15조) | 24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59 |
| 5.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25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113 |
| | | 3. 행정기관 명령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117 |
| |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9 |
| | | 5. 문서보관 | 126 |



사업장 안전관리 진단 예시(양식)

| | |
|---|-----|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59 |
| •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 60 |
| • 위험요인 파악 시 준비 서류 | 62 |
| • 위험성평가 작성 양식·예시 | 74 |
| • 안전보건예산 편성항목·분류 예시 | 76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업무수행 평가기준 | 80 |
| •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기준 | 80 |
| • 관리감독자 수행업무 세부기준·일지 | 81 |
| • 안전보건 전문인력 일지 | 87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운영규정 | 91 |
| • 비상대응 매뉴얼 | 97 |
| •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표 | 99 |
| | |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113 |
| • 산업재해 조사표 | 115 |
| •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 116 |
| | |
| 3. 행정기관 명령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117 |
| • 행정기관 시정사항 이행관리 대장 | 118 |
| | |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9 |
| • 안전보건교육 일지 | 124 |
| • 연간 교육 계획 | 125 |
| | |
| 5. 문서보관 | 126 |
|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책임자 등 선임계(지정·임명) | 127 |
| • 관리감독자 등 연명부 | 128 |
| • 반기별 이행 점검 사항 | 129 |
| • 보호구 지급대장, 순회점검 일지 | 130 |

사업장 안전관리 진단 참고사항

| | |
|---|-----|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59 |
| • 유해·위험요인 통제 절차 및 방법, 통제 방안 | 63 |
| • 건설 및 제조현장 주요 위험요인 | 67 |
|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 73 |
| •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 배치의무 완화 | 84 |
| • 재해위험 높은 업종 | 86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 90 |
| • 적격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 101 |
| • 안전수준평가 세부기준 | 106 |
| | |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113 |
| • 재발방지대책 수립 절차 | 114 |
| | |
| 3. 행정기관 명령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117 |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정명령 예시 | 118 |
| | |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9 |
| • 안전보건 관계 법령(고용노동부 해설서) | 120 |
| •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대상 작업 | 122 |
| | |
| 5. 문서보관 | 126 |
| •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 | 1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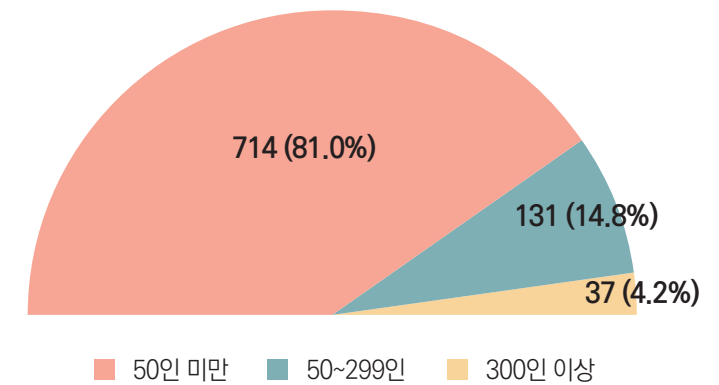
I. 서론



1. 중소기업 안전관리 자율진단 필요성

-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의 약 8~90%를 차지할 정도로 산재 위험도가 높고 안전관리 측면에서 매우 미흡함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 (단위: 명)



- 특히, 안전관리 관련 법규인 산업안전보건법은 복잡·방대하고 기술적이어서 대기업조차 완벽히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교적 인적·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법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장은 안전관리를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어,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역량 강화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2.1.27부터 단계적 시행)으로 산재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정책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가 절실한 상황임
- 따라서 중소기업도 외부기관에만 의존하기 보다 사업주 주도적으로 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사업장의 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매뉴얼 구성 및 활용 시 기대효과

-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본 매뉴얼은 '중소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중대 재해처벌법령 및 고용노동부 최신자료를 기반으로 아래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 법의 목적, 적용대상 및 시기, 안전보건 확보의무, 벌칙 등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 및 비교표
 -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개발한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를 적용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진단(컨설팅)사례 및 관리방안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교육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의무 준수에 활용할 수 있는 문서 양식 및 작성사례
- 중소기업에서 본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각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법 이행력 제고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 대한 역량을 높일 수 있음
- 나아가 전 구성원 참여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종사자)를 보호하고 사고발생 시 초래될 수 있는 경영리스크(처벌, 생산 차질, 부정적 이미지 등)를 감소시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II.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



※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요 골자로 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1.27.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1.27.부터 적용

1. 중대재해란?

■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함

-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환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 시행령 [별표1]에서 인과관계 명확성, 예방가능성, 피해 심각성을 고려하여 24가지 질병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환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비교

| 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 |
|--|----------------------------------|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산업재해 중 |
| ① 사망자 1명 이상 | ① 사망자 1명 이상 |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환자 1년 내 3명 이상 |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환자 동시 10명 이상 |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

※ 본 매뉴얼은 “중대산업재해” 중점으로 작성·제작되었음



2.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적용범위 및 시기

가. 목적(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임
 - “종사자”란 중대재해처벌법상 보호대상으로, ① 회사소속 근로자, ② 사업장 내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③ 기타 용역, 위탁 등의 노무제공자(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과 책임소재 명확화를 통한 산업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을 하고 있음을 비추어, 이 법의 주된 목적이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처벌의 대상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과 법인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
 - “경영책임자등”이란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정부는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를 기업에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함
- 이 법을 통해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

나. 적용 범위(법 제3조)

제3조(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사업 종류에는 제한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지자체, 중앙행정기관도 적용대상임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을 포함하며,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음

참고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 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text{상시근로자수} = \frac{\text{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text{같은 기간중에 가동일수}}$$

다. 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법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2.1.27부터 시행함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이 된 날부터 법이 적용되어,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발생함
-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① 개인사업주, ②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③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4.1.27부터 적용
 - 건설업은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같음하여 개별 건설공사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함



3. 안전보건 확보의무

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시행령 제4조〉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이행 점검 및 필요조치
-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및 평가
-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시간 보장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시행령 제5조〉

-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점검 및 조치
-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관련,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부합하는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사전에 마련하여 검토·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법 제4조제1호, 시행령 제4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그 목표 및 방침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시행령 제4조제1호)

- 상시근로자수가 5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수가 총 3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시행령 제4조제2호)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구축(시행령 제4조제3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같음 가능

- 안전보건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관리(시행령 제4조제4호)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입
·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조치(시행령 제4조제5호)

·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별 1회 이상 평가·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정해진 수 이상 배치(시행령 제4조제6호)

· 타법에 배치기준이 있는 경우 타법에 따름
·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 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보건에 대하여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는지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시행령 제4조제7호)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4조), 안전협의체(제64조, 제75조)를 통해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 '종사자 의견 청취'로 인정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 내용을 담은 매뉴얼 마련 및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시행령 제4조제8호)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조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도급, 용역, 위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시행령 제4조제9호)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 절차
 · 안전 ·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기준
 ·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 기준(건설업 및 조선업)

- 이상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 · 점검하고, 각 이행 관련 자료를 서면 보관
-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관련, 과거 사고 사례 내지 위험 사례를 통계화하고, 그 유형 및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법 제4조제2호)
-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관련, 명령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며 그 적절한 이행을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법 제4조제3호)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관련, 안전보건 관계법령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된 법령이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관리상의 조치를 실시(법 제4조제4호, 시행령 제5조)
 -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것(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 확인 결과에 따라 인력배치 및 추가예산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 반기별 1회 이상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를 확인, 미이행시 지체없이 그 이행조치를 실시(시행령 제5조제3호 · 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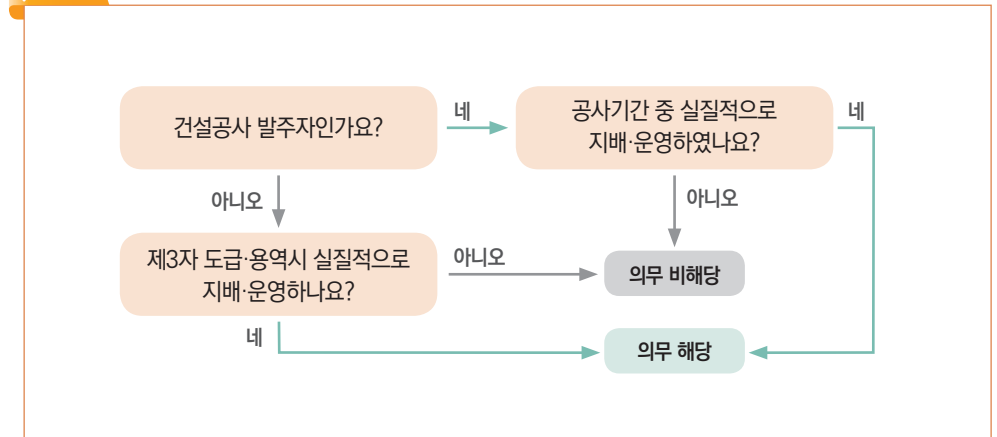
- 이상의 사항에 관한 이행자료는 5년간 서면 보관(시행령 제13조)
 - ▶ 구체적인 규정내용 및 관리방안은 「Ⅲ.-2.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참고

나.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법 제5조)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제3자(도급업체)의 종사자에 대해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함
 - 다만,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참고 제3자 도급시 법 제4조 의무 대상 판단 절차





4. 위반 시 벌칙 및 행정제재

가. 벌칙(법 제6조)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 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 (사업주·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과(임의적 병과)
 - (법인)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 벌금 부과 -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음
-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사업주·경영책임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법인)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 벌금 부과

참고 벌칙 개요

| 구분 | 경영책임자등 | 법인 |
|---|-------------------------|-----------|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50억원 이하벌금 |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벌금 |

나. 안전보건교육 수강 명령(법 제8조)

-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함(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비대상)
 -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경영 방안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
 - (교육시간 및 비용) 총 20시간 범위, 교육대상자 비용 부담
 - (실시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
 - (진행절차) 고용노동부가 분기별 대상자 확정 후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실시기관, 교육일정 등을 통보 - 단, 교육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 실시 7일 전까지 연기를 요청할 수 있음
 - (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차) 1천만원, (2차) 3천만원, (3차) 5천만원



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명칭 등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 (대상)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통보된 사업장
 - (방법) 관보,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1년 간 게시
 - (내용) ①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제목, ② 사업장 명칭, ③ 중대산업재해 발생 일시·장소, ④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 수, ⑤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반사항 포함), ⑥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이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 (기타) 공표 전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

라.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15조)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짐
 -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5.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점과 유사성을 갖고 있음. 가장 큰 차이는 의무주체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은 위반행위가 일어난 사업장의 총괄 안전보건책임자를 위반자로 보는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위반자로 봄

참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
| 의무주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 • 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주, 행위자 • 법인 |
| 보호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노무제공자(위탁, 도급 포함) •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수급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수급인의 근로자 • 특수고용종사근로자 • 노무제공자 |
| 적용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사업장 |
| 중대재해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산업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발생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
| 처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책임자등(자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부상, 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시 2분의 1까지 가중 •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 (부상, 질병) : 10억원 이하 벌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주 및 행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시 2분의 1까지 가중 •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 10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위반) : 5천만원 이하 벌금 |

Ⅲ. 중소기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1. 일반현황

| | | | | |
|---------------------------|-----------|-------|------------|------|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 업종 | 중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 | | | |
| 상시근로자수 | ()명 | | | |
| 협력업체 여부 (사업체 수) | 사내 | 사외 | 해당없음 | |
| | | | | |
| 안전보건 전문인력(명)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 미대상 |
| | | | | |
| 안전보건전문기관 위탁 여부 | 안전관리 | 보건관리 | 미대상 | |
| | | |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구성 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체 | 미대상 | |
| | | | | |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여부 | 작성 | 미작성 | 미대상 | |
| | | | | |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 중대해재처벌법 시행일 : 2022년 1월 27일

☞ ① 개인사업주 ②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③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2.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활용 방법

- 사업장 실태를 반영하여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에 진단결과 체크(V)
- 자율진단 후 체크포인트에 따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이행
 -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이란, '단순 확인'이 아니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의무사항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행여부를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까지 이행'하는 것임

■ 활용 예시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
|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하고 있습니까? | v | | |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안내하고 있습니까? | | v | |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 v | | |
|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까? | | | v |

💡 체크포인트

▶ '미이행' 또는 '이행 중이지만 미흡한' 부분을 '체크포인트' 관리방안에 따라 이행·보완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제1항제1호)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
| ①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 | | |
| ②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 | | |
| ③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안내 하고 있습니까? | | | |
| ④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 | | |

💡 체크포인트

-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회사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
- ※ (안전보건 방침) 산업재해 예방, 위험성 감소, 근로자 건강증진 등을 명시한 최고경영자의 의지 원칙·선언문
 - ※ (안전보건 목표) 안전보건 방침에 따라 위험성평가 결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을 기반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목표

(고려사항)

- ◎ 안전보건 경영방침
 1. 유해·위험요인 특성 및 조직규모에 적합할 것
 2.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등 포함)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지를 포함할 것
 3. 법령 준수의를 포함할 것
 4.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경영철학과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에 대한 의지를 포함할 것
- ◎ 안전보건 목표
 - 측정가능한 안전보건 개선을 목표로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
 - ※ '무재해 달성' 등 광범위한 목표는 바람직하지 않음

(예시)

- ◎ 안전보건 경영방침

나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의 확보가 기업활동의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위험성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잘 준수하겠습니다.
 3. 종사자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년 월 일
○○ 주식회사 ○○ 공장 사업주(경영책임자) ○○○

- ◎ 안전보건 목표
 - 사고성 재해율 00% 감소 - 위험요인·아차사고 신고건수 00건 달성



〈2〉 수립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안내 (준비사항)

- 경영책임자의 서명, 시행일을 명기하여 인트라넷·게시판 등에 게시
- 주요 업무관계자(하청, 파견, 고객 등) 출입 시, 메일 등을 통해 안내

〈3〉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주기적으로 검토·점검 (점검사항)

- 안전보건 방침이 조직에 적합한지
- 안전보건 목표를 달성했는지
- 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검토결과가 양호함에도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증가한 경우 등)

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운영(시행령 제4조제2호)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연도 1월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 가.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
|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까? ※ 전담조직 구성·운영 적용 제외 대상(해당없음 V) - 안전보건 전문 인력이 3명 미만 → 전담조직 구성·운영 미대상 - 상시근로자수 500명 미만이거나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외 건설사업장 → 전담조직 구성·운영 미대상 | | | |

💡 체크포인트

산업안전보건법상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또는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구성·운영

[표 1]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인력

| | |
|-----------------|--|
| 안전관리자(17조) | 50명 이상 제조업, 80억원 이상 건설업 |
| 보건관리자(18조) | 50명 이상 제조업, 800억원 이상 또는 600명 이상 건설업 |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19조) | 20명 이상~50명 미만 - 5개 업종(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
| 산업보건직의(22조) | 50명 이상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제외) ※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산업보건직의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고려사항)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직속(직접 지휘를 받는 조직)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
- 2인 이상으로 구성

(준비사항)

- 전담조직 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표
- 자격증 및 직무교육 실적
- 전담조직의 활동 내역 등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시행령 제4조제3호)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 | | |
| ② 업무절차에 따라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까? | | | |
| ③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 | |

💡 체크포인트

〈1〉 ①과 ②의 의무를 직접 실시하거나, 현장관리자에게 의무준수를 지시

※ (도급 사업 시) 도급사업주 및 수급사업주 모두 실시 주체이며, 사업장 실정에 맞게 각각 실시하거나 공동으로 수행

(고려사항)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요인 확인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과정 * 모든 기계·기구·설비 현황 및 위험요소, 화재·폭발·누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과 건강위해 물질 등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요인 개선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된 유해·위험요인별 제거·대체·통제 방안 마련 • 현장작업자, 관리감독자 등과 함께 개선방안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조치 |
|--|---|

(점검사항)

- 정해진 절차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 위험요소가 적절히 감소조치(제거·대체·통제)되고 있는지

〈2〉 직접 점검 또는 실시결과를 보고받은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

(고려사항)

- 해당 유해·위험 수준에 맞는 실질적인 조치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예시)

- 전문성 부족으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안전 인력을 배치하거나 외부 민간위탁기관의 자문을 받는 등 조치 이행

◆ 참고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록」 위험성평가 절차 체크리스트'를 참고

4)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4조제4호)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
| ①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 | | |
| ② 편성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 | | |

💡 체크포인트

〈1〉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고려사항)

- 사업장 및 동종업계 산업재해 통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시설·설비 개선 필요성 등 고려
- 편성 절차 마련 및 종사자 의견 청취
- 예산 편성 항목
 - 법령 준수 사항, 안전보건 인력, 시설·장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사항 등

〈2〉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

(점검사항)

- 예산 항목이 적절한지
-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 미집행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등

(준비사항)

- 예산편성 근거 및 심의 자료
- 용도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 및 집행 증빙 자료
-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징계 등 제재 기준 등

◆ 참고사항

- ☞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회사의 재정적, 기술적 여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정 지원사업, 전문기관 위탁 등 외부 자원(예산·인력) 활용 방안 검토



[표 2] 안전보건공단 재정·기술지원 사업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 재정지원 | 클린 사업장 조성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 위탁기관의 기술지원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금액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아래 기준 해당시 각각 1,000만원 추가 지원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 선정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등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50% 또는 정액 - 10인 미만 및 고위험 업종은 70% 지원 |
| | 산업재해 예방시설 용자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재보험료 미체납 사업장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대출금리 : 연리 1.5% 지원대상 품목(산업재해·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 - 유해위험 기계·기구 설치 및 교체, 국소배기 시설 등) |
| | 안전투자 혁신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 안전인증제도 이전 제작 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 - 뿌리산업 노후화된 공정 및 설비 보유 사업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비 구매, 제작 및 설치, 기존 설비 해체비용 등 사업비 50%(1억원 한도) |
| 기술지원 (민간위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 (안전, 보건, 건설, 화학, 서비스)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분야별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위탁을 통해 사업장 재해예방활동을 집중 지원 |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시행령 제4조제5호)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있습니까? <small>※ 적용 제외 대상(해당없음 V)</small>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미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참고) - 도급 사업이 아닌 경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미대상 | | | |
| ②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 | |
| ③ 평가 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의 충실성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 | | |

체크포인트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실질적인 사업장 총괄·관리자(공장장, 현장소장 등) - 소규모 사업장은 주로 사업주가 역할 수행
- ※ (관리감독자) 생산 관련 업무 지휘 담당자(부서장, 직장·반장 등 중간관리자)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 사업 시 도급인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업무 총괄·관리자
- *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준비사항)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선임계 (권한 부여에 대한 증빙 서류)
- ◎ 업무 수행 지침 마련 (업무분장, 교육 등 법령상 의무, 근무일지 등 업무 수행내역 기록 및 보고절차 등 포함)
-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 근거 및 집행 내역 (예산 부여에 대한 증빙 서류)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 아래 [표 3] 참조)

〈3〉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관리(반기 1회)

(활용방안)

- ◎ 인사평가체계 개선(안전활동 관련 평가 비율 5% → 30% 확대) → 공장장 등 안전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 참고사항

[표 3]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적용 대상 및 업무

| 구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15조) | 관리감독자(16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62조) |
|-----------|---|---|---|
| 적용 사업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 상이 - (건설) 20억원 ↑ - (제조) 50명 ↑ - (서비스업, 농업 등) 300명 ↑ - (기타) 100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급 사업 시 •업종별 상이 - (건설) 20억원 ↑ - (제조) 100명 ↑ - (조선, 토사석 광업 등) 50명 ↑ |
| 주요 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산재 통계 기록·유지,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여부 확인 •근로자 위험, 건강장애 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작업 기계·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교육·지도 •산재 보고 및 응급조치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위험성평가 관련, 위험요인 파악·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등 사용 여부 확인 |

6)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시행령 제4조제6호)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
|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안전보건관리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 적용 제외 대상(해당없음 V) -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 →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미대상 | | | |
| ② 배치된 안전보건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 | | |

💡 체크포인트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

(준비사항)

-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대한 선임계 (권한 부여에 대한 증빙 서류)
- 업무수행 지침 마련 (업무분장, 교육 등 법령상 의무, 근무일지 등 업무 수행내역 기록 및 보고절차 등 포함)

(2)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을 보장

(검직 예시)

-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인 사업장(안전관리자에 한함)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다른 업무와의 겸직 가능

(준비사항)

- 타 업무 겸직 시 안전보건 관련 업무수행 시간 부여(고시 연내 제정 예정)
- 실제 업무수행 여부 및 수행 시간에 대한 확인 절차 마련
- 절차에 따라 확인한 결과 안전보건 업무를 위한 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경우, 업무 범위·시간에 대한 지침 마련, 예산 부여 등 안전보건 업무 시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참고사항

[표 4]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적용 대상 및 업무

| 구분 | 적용 사업장 | 선임대상/ 자격 | 주요 업무 |
|------------------|--|--------------------------|--|
| 안전관리자 (17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상이 - (건설) 80억원 ↑ - (제조 등) 50명 ↑ * 건설 120억원 ↑, 제조 등 300명 ↑ 전담자 선임 |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자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위험기계·기구, 안전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 보건관리자 (18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상이 - (건설) 800억원 ↑ * 토목공사는 1,000억원 ↑ - (제조 등) 50명 ↑ * 300명 ↑ 사업장 전담자 선임 |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자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개인 보호구, 보건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의료행위(의사·간호사) • MSDS 게시·비치, 지도·조언 및 보좌 |
| 산업보건의 (22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동일 * 보건관리자를 의사로 선임 하거나 위탁한 경우 미선임 가능 | 직업환경 또는 예방의학 전문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는 선임하지 않아도 됨 |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19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업종의 20~49인 사업장은 1명 이상 * 제조업, 임업, 폐수 및 분뇨 처리업 등 | 안전·보건 관리자 또는 교육 이수(검입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역할 수행 ※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시행령 제4조제7호)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
| ① 안전·보건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도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로 인정) ※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 등 적용 제외 대상 → 별도의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대상 - 도급 사업이 아닌 경우 → 안전보건 협의체 미대상 | | | |
| ② 절차에 따라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까? | | | |
| ③ 의견청취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습니까? | | | |
| ④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 | |

💡 체크포인트

〈1〉 안전보건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절차에 따라 종사자 의견 청취

※ (종사자)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2)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3) 사업이 여러차례 도급 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

(고려사항)

-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할 것
 - 사내 온라인 게시판 또는 건의함 활용, 사업장 또는 팀 단위 주기적인 회의 개최 등

〈2〉 의견청취 결과,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이행

〈3〉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예산 부여 등 필요한 조치 수행(반기 1회)



◆ 참고사항

[표 5] 산업안전보건법상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방법

| 구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4조) | 안전보건 협의체(제64조) | 노사협의체(제75조) |
|-------|--|--|---------------------------------|
| 적용 대상 | 업종,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상이 (제조 등 50인 ↑) | 도급인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 | 공사금액 120억원 ↑ 건설업 (토목공사 150억원 ↑) |
| 구성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
| 논의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변경 안전보건교육 관련 사항 작업환경 점검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유해위험 설비 도입 시 안전보건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 존재 시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사항 등 ※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인 합동점검, 순회점검도 종사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임 | |
| 운영 | 정기회의(분기별), 임시회의 | 매월 | 정기회의(2개월), 임시회의 |
| 벌칙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500만원 이하 벌금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표 6] 종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안전보건 활동 예시

| 구분 | TBM 활동(작업 전 안전미팅) | 아차사고 발굴활동 | 안전제안 활동 |
|-------|--|--|--|
| 실시 절차 | ①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 중심으로 현장에서 소규모(5-7명) 단시간(5-10분) 회의 개최 ② (회의 중) 보호구 및 건강상태 점검 및 안전 작업방법 논의(전원 발언 기회 부여) ③ (회의 종료 직전) 당일 작업 위험요인 및 보호구 착용 재강조 ④ (회의 종료 후) 안전보건 확보 관련 내용 작업절차에 반영 | ① 종사자에게 아차사고 사례 공유 지시 ② '게시판', '아차사고 발표대회 개최' 등 사례 공유 창구 마련 ③ 안전관리부서 공유된 아차사고 사례 평가 ④ 우수 공유사례 선정 및 포상(인센티브) ⑤ 안전관리부서 아차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실시 ⑥ 교육자료 및 사례집 제작에 공유사례 활용 | ① 사업장 위험성 감소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창구' 마련(안전 제안함, 안전신문고 등 설치) ② 안전관리부서 제안된 '아이디어' 평가 ④ 우수 아이디어 선정 및 포상(인센티브) ⑤ 선정된 아이디어에 따라 가능한 신속하게 위험성 감소조치 실시 ⑥ 즉시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등에 활용 |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8호)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
| ①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등 대응조치,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 | |
| ②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까? | | | |

💡 체크포인트

〈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 대응 매뉴얼 마련 (준비사항)

- 중대산업재해 등 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중지 규정 반영
 - 사업주의 작업중지(제51조), 근로자의 작업중지(제52조)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대피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119 등 긴급상황시 연락체계, 기본적인 응급조치 방안 포함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현장 출입통제, 전체 사업장에 재해상황 공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 필요시 대응 훈련(시뮬레이션) 실시
 - 대응계획에 따른 구성원별 역할, 보호구 착용, 대피방법 등 교육
 -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대응계획에 반영·개선
- 비상대응 시설·장비 목록 파악

(예시)

- 대응 매뉴얼 작성 예시
 - 중대한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재해(화재·폭발, 누출, 질식, 붕괴 등) 시나리오 작성
 - ※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사업장별로 시나리오 작성
 -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절차) 마련
 - (재해 발생 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발생 보고 등 포함
 -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상황 보고 전파 등 포함
 - (기타) 인력, 장비 보유 현황, 경보·비상연락체계, 교육·훈련계획 등
- 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예시
 - ① 현장 대응(긴급 처리, 2차 재해 방지, 대관 신고) → ② 작업중지 해제 → ③ 사고조사 대응 → ④ 유족 합의 → ⑤ 각 절차별 보고



<2>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수행(반기 1회)

◆ 참고사항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예시(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9)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시행령 제4조제9호)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 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
|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 | | |
|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 | |
|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 | |
| ④ 기준·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및 위탁이 이뤄지는지 반기 1회 점검하고 있습니까? | | | |

💡 체크포인트

<1>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계약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준비사항)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마련
 - (평가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의 안전성, 비상시 대응계획,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 계약체결 시 고려사항
 - 평가기준에 부적합한 업체와는 계약하지 않을 것
 - 계약서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작업절차 준수,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 안전보건 확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보건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건설업) 또는 건조기간(조선업) 기준 마련
 - 과도하게 짧은 공사기간을 제시한 업체는 선정하지 않을 것



<2> 기준-절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반기 1회)

◆ 참고사항

-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한 계약 절차(출처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① 계약 입찰(안전작업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제시)
 - ② 입찰서류 검토(수급업체 평가)
 - ③ 업체 계약(적격 수급업체 선정)
 - ④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실시(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및 산재예방조치, 정보 제공 등)
 - 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및 환류 (우수 사업장 인센티브 부여, 미흡 사업장 도급 전 안전보건 관리 반영)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제1항제2호)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
| ① 재해 발생 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 | | |
| ②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 | | |

💡 체크포인트

<1>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준비사항)

●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절차 마련

- (1)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결과분석 → (2) 유해·위험요인 및 발생원인 파악(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 (3) 파악된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 검토 → (4) 종합적 개선대책 수립
- ※ 해당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 포함된 내용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조치해야 함

<2>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조치 등)를 실시 (고려사항)

- 재해의 위험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시행령 제4조제3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다. 행정기관 명령 등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제1항제3호)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을 명령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 | | |

💡 체크포인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근거한 처분으로 개선·시정명령을 한 경우, 필요한 조치 실시

◆ 참고사항

● ‘관계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이란?

- 해석상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령까지 포함되므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 보다 범위가 넓고 포괄적임
- 개선·시정명령의 불이행이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작용해야 하므로, 사실상 지방노동청·환경청 관계 법령상 시정·명령으로 볼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정명령 예시

-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4조제1항제4호)

1)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시행령 제5조제1호·제2호)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
|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 | | |
| ②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도 인정) | | | |
| ③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까? | | | |
| ④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 | |

💡 체크포인트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예시)

- 산업안전보건법(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의 유지·증진)
 - 광산안전법(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 방지)
 - 원자력안전법(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 항공안전법
 - 선박안전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
 - 폐기물관리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보호)
 - 선원법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관리 시 관련종사자 건강 보호) 등
- ※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에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도 포함됨

(2)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

(고려사항)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예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전문기관(법 제17조), 보건관리전문기관(제1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제47조),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제73조)
- 점검 업무 위탁 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 위탁을 수행한 업체가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해 수행

(준비사항)

- 반기 1회 이상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 기록
- 점검 결과에 따른 보고자료
- 인력 배치 및 예산 확보 내역 등 필요한 조치 지시 자료 등

2)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의무 이행(시행령 제5조제3호·제4호)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
|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 | | |
|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점검하고 있습니까? | | | |
| ③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까? | | | |
| ④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는 교육에 대해 지체없이 교육 실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 | |

💡 체크포인트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의무 이행

(예시)

-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상용직 16시간, 일용직 2시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반 16시간,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 시 2시간
- 「항공안전법」 상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 「선박안전법」 상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2)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는 안전보건교육 확인 시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교육 의무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실시

(준비사항)

- 안전보건교육 실시 자료(교육 일지 등)
- 교육 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내용 보고 자료
- 교육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지시 자료 등

마. 문서보관(시행령 보칙)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5년 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4조 | | | |
| ②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5년 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5조 | | | |

체크포인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조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치를 이행한 날로부터 5년 간 보관 (준비사항)

- 각종 의무에 따라 마련된 절차, 매뉴얼 등 자료
-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반기별 점검·평가 결과
 - 유해·위험요인 개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 근로자 의견청취
 - 비상조치 매뉴얼
 -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기준·절차 마련
- 경영책임자 보고자료
- 예산 집행, 인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 지시 내용 등

IV. 사업장 안전관리 진단 사례 및 관리방안



※ 본 파트의 문서양식(예시)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법적 효력 또는 표준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 안전관리 진단 총평 및 결과 요약

가. 안전관리 진단 개요

- **(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있어 필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컨설팅업체와 중소기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적용·진단해봄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수준과 현장실행력을 제고
- **(대상)** 30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 5개사

| 구분 | A 사업장 | B 사업장 | C 사업장 | D 사업장 | E 사업장 |
|---------|--------------|-----------|----------------|-----------|-----------------|
| 중분류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상시 근로자수 | 50인 미만 | 100인 이상 | 100인 미만 | 100인 이상 | 100인 미만 |

- **(일정)** 2021. 11.17 ~ 12.7
- **(수행기관)** 한국RMS(주)
- **(조사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사항
 -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설정 및 목표
 - 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운영
 - 3)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 4)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 6)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9)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

나. 안전관리 진단 총평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
 -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및 목표 설정) 안전환경팀 등 안전보건 전담부서를 보유한 회사만 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진단 사업장 모두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회사가 안전보건관리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었음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이행점검 및 필요조치) 일부 PSM 대상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사업장 자체 인력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무한 실정
-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대부분의 회사가 안전보건 관련 투자는 하고 있지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 확인'을 위한 회계계정은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절차 마련, 이행점검 및 필요조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절차 마련과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이 관련 기준·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점검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및 이행점검(시행령 제4조제3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및 평가(시행령 제4조제5호)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시행령 제4조제7호)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조치사항 점검(시행령 제4조제8호)
 -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시행령 제4조제9호)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제2호)
 -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이행 점검(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제4호)

■ 진단 총평

- 안전관리 진단 실태조사는 비록 5개 중소기업장을 대상으로 수행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장이 동일한 여건일 것으로 추정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소기업장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민간기관 차원의 실무 안내서 또는 지침서 배포 등 적극적인 지원·노력이 필요

다. 진단결과(요약)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및 목표 설정

- '경영방침의 수립 및 목표의 설정',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안내하는지 여부', 그리고 '경영방침 및 목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함
- 안전보건 전담부서를 보유한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미수립 회사는 모두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전담부서의 존재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회사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가 있다는 것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음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설정'의 경우, 중소기업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 지표(목표) 관리 항목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기본적으로 회사내에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정량화된 지표관리가 이행되어야 안전보건 목표의 설정과 관리가 가능함

- 조사대상 중 석유화학업종에 해당하는 다국적기업만 이를 이행하고 있었으며, 일부 회사의 경우 생산공정 전반에 핵심성과지표(KPI)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안전보건 항목은 포함하지 않음

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유해·위험요인이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있었음
- 그러나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더라도 업무분야별로 전담자가 지정·운영되기 보다는 중소기업 여건 상 포괄적인 업무(안전·보건·환경·소방관리 등)를 담당하여 겸직하고 있는 실정
- 일부 회사는 외부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대행)하였으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비스의 질도 회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자체 인력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었음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이행점검 및 필요조치(위험성평가나 유사 제도 실시 여부로 판별)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PSM(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인 사업장만 자체 인력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음
 - PSM 등급에 따라 주기적인 이행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위험성평가나 작업위험성 분석(JSA) 도구를 이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음
 - 일부 PSM 대상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위험성평가 수행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체 인력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이 없었음
- 안전보건관리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의존성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뚜렷한 바, 단순한 외부 위탁은 자체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접근을 더욱 어렵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동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음
 - 위험성평가를 정기적(매년)으로 실시할 경우 반기 1회 이상 점검까지만 인정되므로, 사업장에서 점검 후 필요조치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

4)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일부 회사만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고 매년 점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회사는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어 집행실태를 확인할 수 없었음
- 안전보건 관련 투자는 하지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확인을 위해서는 안전보건 관련 계정항목의 신설이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 모든 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있으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평가기준의 마련 및 업무수행의 충실성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6)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 모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부 회사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만을 고려했을 때 50여명의 상시근로자수를 보유한 중소기업이지만 연매출액이 중견기업 수준으로 전담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며, 또한 이들이 분야별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음
 - 반대로 다른 회사들은 안전보건 전담인력을 고용할 여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안전보건업무 담당자가 있더라도 중소기업의 여건 상 여러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 일부 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통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종사자의견을 청취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개선방안의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시스템은 구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PSM 대상인 사업장만 동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회사들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매뉴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모든 회사가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9)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

- 대부분의 회사들은 관련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았고, 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회사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시스템은 구축하지 않은 것 파악됨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위험성평가를 체계적으로 도입한 회사는 동 의무에 따른 대책을 수립·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대로 위험성평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위험관리체계가 부실한 사업장은 전반적으로 재해 발생에 대비한 대책 수립·이행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일부 회사는 개선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일부는 개선이나 시정을 명령한 경우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일부 회사는 안전보건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오해하거나, 법규 전반 의무에 대한 이해 또는 인식 부족으로 인해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존재
-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의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현재 모든 회사에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있어 중소기업이 이를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명확한 제시 및 예시가 필요함

2)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의무 이행

- 대부분의 회사들은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대상자 파악, 교육인원 누락 등 이해부족으로 인해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대부분의 회사들은 교육 실시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교육 이후에도 점검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었음

5. 문서보관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서는 5년간 보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들은 내부규정상 3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어, 법 준수를 위해서는 회사별로 기존 내부규정의 개정 또는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2.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항목별 진단 현황 및 개선방안

가. 진단 사업장 현황

| 구분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
| 업종 | 제조업 | 제조업 | 제조업 | 제조업 | 제조업 |
| 표준산업분류 코드 | 23322 | 24211 | 29142 | 24191 | 20202 |
| 중분류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협력업체 여부(사업체 수) | 1 | 2 | | 1 | |
| 안전보건전문인력 선임여부 | 안전관리자 | ○ | | | ○ |
| | 보건관리자 | | | | ○ |
|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 ○ | | | |
| | 미대상 | | | | |
| 안전보건전문기관 위탁여부 | 안전관리 | ○ | ○ | ○ | |
| | 보건관리 | | ○ | ○ | |
| | 미대상 | ○ | |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 | ○ | ○ |
| | 노사협의체 | | | | |
| | 미대상 | ○ | | ○ | |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여부 | 작성 | | ○ | ○ | ○ |
| | 미작성 | | | | |
| | 미대상 | ○ | | ○ | |

- 제조업 5개사(상시근로자수 23~170명 범위, 일부 사내협력업체 보유)에 대한 안전관리 진단 실시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모두 선임하고 있는 사업장은 1개사에 불과, 나머지 4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 안전보건전문기관에 위탁
- 5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종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로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나. 체크리스트 항목별 안전관리 결과 및 개선방안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및 목표 설정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 ①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 X | O | X | X | O |
| ②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 X | X | X | X | O |
| ③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안내하고 있습니까? | X | O | X | X | O |
| ④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 X | X | X | X | O |

■ 실태조사 현황

- (A사) 조직도상 4개 부서(관리부, 영업부, 품질관리부, 생산부)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관리 업무는 관리부에서 수행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목표설정 등 수립되어 있지 않음
- (B사)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으나 목표설정 관리와 주기적 검토는 하지 않음
- (C사) 핵심성과지표(KPI)는 관리하고 있으나, 안전보건 항목(목표)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위험성평가 계획에 '경영방침'이 첨부되어 있었으나, 위탁기관에서 타사 Sample을 인용하여 작성해준 것으로 실제 사업장내 구성원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D사) 핵심성과지표(KPI)는 관리하고 있으나, 안전보건 항목(목표)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E사) 다국적 기업으로 Global 방침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관리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하는 등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전사 핵심성과지표(KPI)에 안전보건 관련 항목을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세부 추진계획(일정, 예산, 업무분장 등)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해율 감소 보다는 '위험요소 확인', '야차사고 확인 및 개선 실적' 등 선행지표 위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회사에 적합한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위험요소 현황을 파악할 필요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참고) 안전보건 경영방침 예시

나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의 확보가 기업활동의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위험성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잘 준수하겠습니다.
3. 종사자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년 월 일

○○ 주식회사 ○○ 공장 사업주(경영책임자) ○ ○ ○

○ (참고) 안전보건 목표 예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요인·아차사고 신고 건수 - 위험요인 발굴 건수 - 위험요인 대비 조치 이행률 - 경영방침 게시 건수(온·오프라인) - 경영방침에 대한 근로자 인지도 - 안전보건 예산·인력 증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작업절차서 도입·개선 건수 - 안전보건교육 이행률 - 작업허가제 등 도입·개선 건수 - 비상조치계획 훈련 건수 - 기계·설비 정기검사 실시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건수 등 |
|---|---|

(출처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고용노동부, 2021)

→ 예시 내용은 회사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장 상황에 맞게 반영·수정하여 수립해도 무방함 단,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

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운영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까?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실태조사 현황

- (A사) 전담조직 구성 대상 아님(안전관리 업무 위탁)
- (B사) 전담조직 구성 대상은 아니지만 전담조직(안전환경팀)을 운영하고 있음
 - 안전관리자가 있으나 선임은 하지 않았으며,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 중임
 - 생산본부 산하에 안전보건·환경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안전환경팀(부장-1, 안전 및 환경 관리자-2))가 존재하지만, 사업장 여건 상 겸직하고 있음
- (C사) 전담조직 구성 대상 아님(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
- (D사) 전담조직 구성 대상 아님(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
- (E사) 전담조직 구성 대상은 아니지만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안전 및 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개선방안

- 전담조직 구성·운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 X | ○ | X | X | ○ |
| ② 업무절차에 따라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까? | X | X | X | X | X |
| ③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X | X | X | X | ○ |

■ 실태조사 현황

- (A, C, D사)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있으나, 업무절차 마련, 개선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보고, 이에 따른 경영자의 조치는 없음
- (B사) 작업위험성분석(JSA)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반기별 주기적인 점검은 하지 않고 있으며, 결과에 따른 별도 조치도 이행하지 않음
- (E사) 공정 위험성평가 및 작업위험성분석(JSA)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계획에 따라 점검 및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유해·위험요인은 안전순찰·제안활동, 위험성평가, 사고(아차사고 포함)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 위험요인 확인대상 | 방법 |
|------|-------------------------------------|--|
| 1 단계 | 기계·기구·설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내 모든 기계·기구·설비 현황을 파악 • 기계·기구·설비마다 위험요소를 세부적으로 확인 •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던 설비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 |
| 2 단계 | 화재·폭발·누출위험 화학물질, 건강 위해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DS 자료 확인 •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인자로 분류 |
| 3 단계 | 작업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및 재해 유형과 연계하여 위험장소와 위험작업 파악 • 현장작업자 참여 |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업무가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경영자에게 보고하여 지원을 받는 등 일련의 과정을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음
 -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단·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개선 추진 필요

☞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참고> 위험요인 파악 시 준비 서류

- 사고조사보고서 등 과거의 재해보고서
- 기계, 장비 등 보유 현황 및 설명서 공정별 작업절차도
-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MSDS
- 안전모, 마스크 등 안전장비 보유 현황
- 외부 전문기관의 지도·점검 결과
- 작업환경측정 결과
- 근로자 교육자료 등

☞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참고> 유해·위험요인 통제 절차 및 방법 예시

| 절차 | 방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위험장소, 작업방법 파악 • 발생 가능한 재해 유형 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 및 관리기준 설정 • 유해·위험요인별 제거·대체·통제 방안 설정 • 현장 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참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조치 여부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이행 시 작업중지, 개선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요인 제거, 대체, 통제 등 방법 적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자에게 안전작업절차 주지 |

○ <참고> 유해·위험요인 통제 방안 예시

1. 재해 유형별 예방조치 방안

□ 떨어짐

- ① 위험요인: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② 예방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③ 제거·대체: 설계·시공 시 개구부 최소화, 작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추락 위험 장소 최소화
- ④ 통제
 - (공학적)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Safety net)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 시스템비계* 활용
 - * 규격화된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를 안정적인 구조로 조합하여 사용하는 비계
 - (행정적) 작업 전 관리감독자의 안전대 부착 설비와 추락방호망 점검 및 작업자들의 안전대 착용 지시, 추락위험 표지판 설치
- ⑤ 개인보호구: 모든 작업자는 언제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 끼임

- ① 위험요인: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 * 위험기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참고
- ② 예방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③ 제거·대체: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 도입 또는 작업방법·동선 고려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④ 통제
(공학적) 기계·설비의 작업점에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어·롤러 등의 말림점이나 벨트·체인 등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 설치
(행정적) 방호조치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여부 확인, 위험기계·기구의 정비·수리 등 비정형작업 전 운전 정지, 기동스위치 잠금 조치 및 표지판(조작금지) 설치 (Lock Out, Tag Out), 작업허가제* 등
* 작업부서가 소관 상급부서 또는 안전부서의 허가 승인을 거쳐 작업을 실시
 - ⑤ 개인 보호구 :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착용, 목장갑 착용 금지
- 화재·폭발 재해 예방
- ① 위험요인 :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이나 작업
* 화학물질별 위험성과 관리체계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확인
 - ② 예방방안 :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③ 제거·대체 : 화기작업 시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및 인근 가연물 제거, 건설공사 시 비가연성 자재로 대체
 - ④ 통제
(공학적) 용접작업 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 방화포 설치
(행정적) 화재·폭발 위험 장소에서 화기작업 시 작업장 내 위험물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 수립, 화기작업 시 가스 및 분진 농도 측정 및 주기적 확인, 작업 중 화재감시인 배치
 - ⑤ 개인 보호구 : 제전작업복 착용, 가스검지기 휴대, 방폭공구 사용
- 질식 재해 예방
- ① 위험요인 : 밀폐공간 등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
* 최근 10년 간('11~'20) 밀폐공간 질식 재해자 316명 중 168명 사망(53.2%)
- [밀폐공간]**

 -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
 -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18개 작업장소)
 - * 산소결핍 :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 * 유해가스 :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 ② 예방방안 :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③ 제거·대체 : 설계단계부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조성, 밀폐공간 내부의 기계·기구 제거(예: 내부모터 → 외부모터)
 - ④ 통제
(공학적) 환기·배기장치 설치, 유해가스 경보기 설치
(행정적)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작업허가제 도입,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작업수칙 규정, 감시인 배치
 - ⑤ 개인 보호구 : 송기마스크 착용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 2. 비정형작업 재해 예방
- 비정형작업
 - 작업조건, 방법 순서 등 표준화된 반복성 작업이 아니고, 작업의 조건 등이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비·처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등의 작업
 - (위험의 특성) ① 위험이 특정 기계·설비에 국한되지 않음, ② 생산효율을 위한 전원 미차단이나 방호장치 부재 또는 해체, 안전절차 및 교육 부재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적 특성
 - 비정형작업 재해예방 기법
 - ①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 기계의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
 - * 전기 잠금장치, 스위치 잠금장치, 게이트밸브 잠금장치, 볼밸브 잠금장치, 자물쇠·결쇠 등

| [LOCK-OUT 잠금장치] | [TAG-OUT 표지판] |
|--|---|
| 기계 등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여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물쇠·열쇠와 같은 잠금수단에 이용되는 장치 | 표지판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가동하지 않도록 에너지 차단장치와 기계가 통제되고 있음을 표시하고 차단장치의 잠금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꼬리표와 같은 경고표지 |
|  |  |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 정지 → 전원차단 및 잔류에너지 확인 →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 재가동

- 작업허가제
 - 고위험 비정형작업의 경우, 작업부서가 소관 상급부서 또는 안전부서의 허가승인을 거쳐 작업을 실시하는 안전관리기법
 - (절차) 안전작업 허가신청(작업자) → 안전조치 확인 및 허가(안전담당자) → 작업(작업자) 및 감독(안전담당자) → 완료확인 및 허가서 보존(안전담당자)

3. 화학물질 관리

- 유해물질 관리
 - 유해물질(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은 근로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므로 엄격한 관리 필요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9(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및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참고
 - 유해물질 취급 전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하여 유해·위험성 및 적정 보호구, 비상 시 대응요령 숙지 필요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직업성 암 유발물질 등은 원칙적으로 제조·사용 등 금지(산안법 제117조), 대체 불가능한 화학 물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필요(산안법 제118조)
- 관리대상유해물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은 산업안전보건 제3편 제1장에 따라 사용

사업주는 제조등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함

- *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참조
-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함
-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참조
- ** 30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지원제도 활용 가능

□ 위험물질 관리

- 화재·폭발 등의 원인이 되는 위험성을 가진 물질(위험물질)은 취급부주의 등에 따라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수칙 준수 필요
 -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 대규모 재난을 야기할 수 있는 51종의 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심사 및 이행 필요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참고
 - **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필수 기재
- (기타) 물리적·생물학적·인간공학적 인자를 제거·대체하지 못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건기준(제3편*) 준수 필요
 - * 소음진동(제4장), 기압(제5장), 온도습도(제6장), 방사선(제7장), 병원체(제8장), 분진(제9장), 밀폐공간(제10장), 사무실(제11장), 근골격계부담작업(제12장), 기타(제13장)

(출처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고용노동부, 2021)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참고> 건설 및 제조현장 주요 위험요인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건설현장의 주요 위험기계

| 구분 | 작동 원리 | 용도 | 위험요소 (재해 현황, 관리제도) |
|---|---|---|--|
|  굴착기 | 흙, 암, 버킷 등의 구조물과 이들을 작동시키는 유압 실린더와 유압 파이프 등의 회로에 의해 작동되는 건설기계로 360° 선회가 가능함 | 굴착 및 적재용 장비로 쓰이며, 별도의 장치부착을 통해 파쇄, 절단작업 등이 가능함 | 총돌 및 협착, 경사지 전도, 자재낙하 등 순으로 재해 발생 ▶ 최근 5년간 118명 사망 건설기계검사 운전원 면허자격 |
|  이동식 크레인 (기중기) |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고 불특정 장소로 이동 가능한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가능한 기계 | 화물을 운반하기 위함 | 넘어짐, 떨어짐 등 ▶ 최근 5년간 72명 사망 * 기중기 : 33명 차량탑재형 크레인 : 39명 건설기계 검사 운전원 면허자격 |
|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며 동력에 의해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건설기계장비 | 고소(高所) 작업 위치로 사람을 이동시켜주기 위함 | 넘어짐, 떨어짐 등 ▶ 최근 5년간 61명 사망 안전인증·검사 운전원 면허자격 |
|  타워크레인 | 마스트, 케이지, 턴테이블, 지브 등으로 구성되며, 트롤리의 후크에 양중물을 매달아 현장 내 자재의 수직·수평운반 및 이동을 담당 | 형태에 따라 T형과 러핑형으로 크게 나뉘며, 건설현장 내 거푸집, 철근 등 각종 자재를 운반 | 설치·상승·해체 중 붕괴, 취급 중량물 맞음 또는 떨어짐 ▶ 최근 5년간 46명 사망 건설기계검사 운전원 면허자격 |
|  고소작업대(시저형) | 고소작업 시 작업 여건상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계 | 고소(高所) 작업 위치로 사람을 이동시켜주기 위함 | 떨어짐, 끼임 등 ▶ 최근 5년간 45명 사망 안전인증 방호조치 |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구분 | 작동 원리 | 용도 | 위험요소 (재해 현황, 관리제도) |
|---|---|-------------------------------------|--|
|  덤프트럭 | 화물자동차의 하나로 차대의 적재함을 자체적으로 기울여 화물을 하역할 수 있는 구조의 건설기계 | 기동성이 좋아 원거리 화물 운반(토사, 모래, 자갈 등)에 적합 | 반경 내 충돌, 전도 및 협착 등 ▶ 최근 5년간 43명 사망 건설기계검사 운전원 면허자격 |
|  로우더 | 기체를 전진시켜 기체 전방에 있는 셔블을 광석이나, 토사 속에 밀어 넣고 퍼올려서 목적지로 이동 | 굴삭 된 토사, 골재, 파쇄암 등을 운반기계에 싣는 데 사용 | 반경 내 충돌, 전도 및 협착 등 ▶ 최근 5년간 31명 사망 건설기계 검사 운전원 면허자격 |
|  항타기·항발기 | 커다란 해머 따위로 말뚝을 내리치거나 말뚝 위에 해머 따위를 올려놓고 진동시켜서 박음 | 기초 공사에 쓰이는 기계의 하나로, 말뚝 따위를 땅에 박음 | 반경 내 충돌, 전도 및 협착 등 ▶ 최근 5년간 19명 사망 건설기계 검사 운전원 면허자격 |
|  로올러 | 회전하는 원통형 장비를 사용하여 지면 위를 이동하면서 일정한 압력을 연속적으로 가함 | 도로공사 등에서 지면을 평평하게 다짐 | 반경 내 충돌, 전도 및 협착 등 ▶ 최근 5년간 16명 사망 건설기계 검사 운전원 면허자격 |
|  콘크리트 펌프카 | 펌프를 통해 유압을 발생시켜 붐대를 통해 원하는 장소에 콘크리트를 타설 | 콘크리트를 작업 현장으로 압송 | 반경 내 충돌, 전도 및 협착 등 ▶ 최근 5년간 15명 사망 건설기계 검사 운전원 면허자격 |
|  건설용 리프트 | 동력으로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여 인력과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 |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함 | 설치·해체 중 붕괴, 추락 등 ▶ 최근 5년간 13명 사망 안전인증 안전검사 |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구분 | 작동 원리 | 용도 | 위험요소 (재해 현황, 관리제도) |
|--|---|--------------------------------------|---|
|  천공기 | 유압으로 움직이는 힘세고 강한 착암기를 여러 개 장착해 구멍을 만듦 | 땅이나 암석을 파거나 뚫을 때 사용 | 반경 내 충돌, 전도 및 협착 등 ▶ 최근 5년간 7명 사망 건설기계 검사 운전원 면허자격 |
|  도저 | 무한궤도를 돌려서 고르지 않은 곳을 앞쪽에 달려 있는 블레이드를 이용해 땅을 고름 | 땅을 고르는 작업 | 반경 내 충돌, 전도 및 협착 등 ▶ 최근 5년간 5명 사망 건설기계 검사 운전원 면허자격 |
|  크레셀 | 조개와 비슷한 형태의 개폐 버킷을 사용하여 수직으로 굴착 | 구조물의 기초 및 우물통과 같은 협소한 장소, 연약한 장소를 굴착 | 전도 및 협착 ▶ 최근 5년간 2명 사망 건설기계 검사 운전원 면허자격 |

(출처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고용노동부, 2021)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제조현장의 주요 위험기계·기구

| 구분 | 작동 원리 | 용도 | 위험요소 (재해 현황, 관리제도) |
|---|--|------------------------------------|--|
|  지게차 | 차체 앞에 화물적재용 포크와 승강용 마스트를 갖추고, 포크 위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함과 동시에 포크의 승강작용을 이용하여 적재 또는 하역작업에 사용하는 운반기계 | 화물의 운반 및 적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 | 부딪힘 또는 깔림 등 ▶ 최근 5년간 151명 사망 방호조치 안전원 면허자격 |
|  크레인 | 훅(hook)이나 그 밖의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 (호이스트, 갠트리, 차량탑재형 크레인, 천장주행 크레인) | 조선, 기계 등의 제조공정에서 취급하는 중량물을 인양하기 위함 | 취급 중량물 맞음 또는 떨어짐 ▶ 최근 5년간 98명 사망 * 차량탑재형 크레인 : 39명 천장·갠트리 크레인 : 59명 안전인증 안전검사 |
|  컨베이어 | 재료나 화물을 일정한 거리 사이를 두고 자동으로 연속 운반하는 기계 (벨트, 체인, 롤러, 스크류) | 화물 등을 운반하기 위함 | 구동부 등 끼임 ▶ 최근 5년간 55명 사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
|  고소작업대(시저형) | 고소작업 시 작업 여건상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한기계 | 고소(高所) 작업 위치로 사람을 이동시켜 주기 위함 | 넘어짐, 떨어짐, 끼임 등 ▶ 최근 5년간 45명 사망 안전인증 방호조치 |
|  리프트 | 동력으로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 (산업용 리프트, 건설용 리프트,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함 | 운반구와 구조물 등 사이 끼임 ▶ 최근 5년간 37명 사망 안전인증 안전검사 |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구분 | 작동 원리 | 용도 | 위험요소 (재해 현황, 관리제도) |
|--|---|--|---|
|  산업용 로봇 |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3축 이상 메니플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 |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함 | 지그 또는 로봇팔 등 끼임 ▶ 최근 5년간 16명 사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
|  압력용기 |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 | 화학공정(반응, 열교환 등) 또는 압력을 요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함 | 과압으로 인한 파편 맞음 등 ▶ 최근 5년간 14명 사망 안전인증 안전검사 |
|  공작기계 | 절삭구를 사용하여 금속 및 기타의 재료를 가공하여 필요한 모양으로 만드는 기계 (선반·드릴기·평삭기·형삭기·밀링기) | 재료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으로 원하는 치수형상으로 만들기 위함 | 작업복, 목장갑 등 말림 또는 가공물 등 맞음 ▶ 최근 5년간 14명 사망 자율안전확인신고 |
|  사출성형기 | 열을 가하여 플라스틱, 고무 등의 재료를 노즐을 통해 2개의 금형사이에 주입하여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성형·생산하는 기계 | 자동차용 부품, 가전제품, 휴대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플라스틱의 형상을 성형하기 위함 | 금형 사이 끼임 ▶ 최근 5년간 12명 사망 안전인증 안전검사 |
|  혼합기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 |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기 위함 | 회전날 사이 끼임 ▶ 최근 5년간 11명 사망 자율안전확인신고 |
|  프레스 | 동력에 의하여 금형을 사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 | 금속 또는 비금속 물질에 외력을 가하여 원하는 형상을 얻기 위함 | 금형 사이 끼임 ▶ 최근 5년간 10명 사망 안전인증 안전검사 |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구분 | 작동 원리 | 용도 | 위험요소 (재해 현황, 관리제도) |
|--|--|----------------------------------|--|
|  파쇄기·분쇄기 |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기계 |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작은 덩어리로 부수기 위함 | 파쇄날·분쇄날 끼임 ● 최근 5년간 7명 사망 자율안전확인신고 |
|  금속절단기 | 동력으로 작동되는 톱날을 이용하여 냉간금속을 절단하는 기계 | 냉간금속을 절단하기 위함 | 감전 또는 절단기 등 맞음 ● 최근 5년간 4명 사망 방호조치 |
|  식품가공용기계 | 채소, 육류, 어류, 곡물 등 식품을 가공하는 기계 (파쇄기·절단기·혼합기·제면기) | 식품을 파쇄, 절단, 혼합하거나 면을 뽑기 위함 | 회전날 사이 끼임 또는 맞음 ● 최근 5년간 4명 사망 자율안전확인신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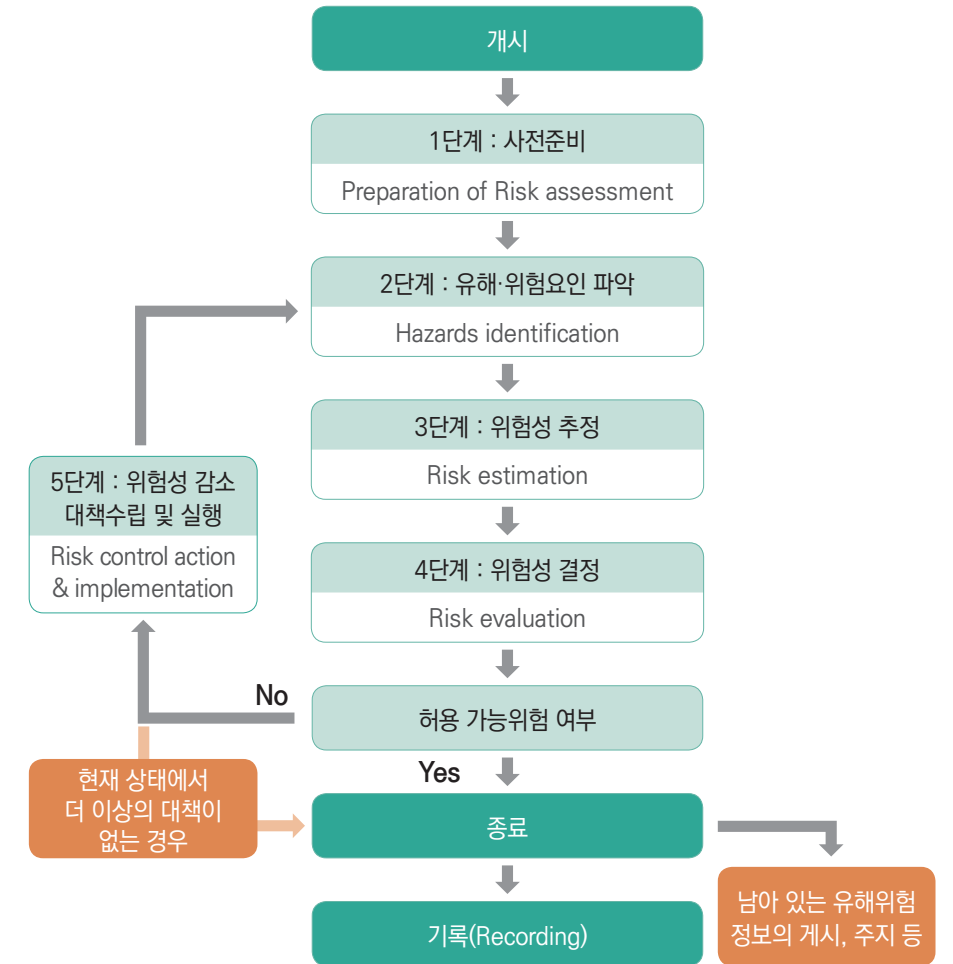
(출처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고용노동부, 2021)

○ <양식> 이행점검 체크리스트(안)

| 부서 | 유해·위험요인 | 점검결과 | | 조치내역 | |
|----|---------|------|-----|------|------|
| | | 내용 | 점검일 | 조치내용 | 조치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출처 :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 고용노동부, 2020)

구체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부록」 2.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체크리스트 참고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양식> 위험성평가 작성 양식

| No | 부서/공정 | 단위작업장소 (위치/설비) |
|----|-------|-------------------|
|----|-------|-------------------|

현황 및 문제점

•

(사진)

[유해·위험요인]

개선방안

•

관련 법규

•

위험성평가

| 현재의 위험성 | | | 개선 후 위험성 | | |
|-------------|--------|--------|----------|--------|--------|
| 유해·위험 요인 | | | 조치사항 | | |
| 가능성(5) | 중대성(4) | 위험성 추정 | 가능성(5) | 중대성(4) | 위험성 추정 |
| | | | | | |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참고> 위험성평가 작성 예시

| 01 | 부서/공정 | 단위작업장소 (위치/설비) |
|----|-------|-------------------|
|----|-------|-------------------|

현황 및 문제점

• 원료투입설비 회전부위 방호커버 없음



[회전부위 방호덮개]

개선방안

• 회전부위 방호커버 설치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위험성평가

| 현재의 위험성 | | | 개선 후 위험성 | | |
|-------------|------------|--------|----------|--------------|--------|
| 유해·위험 요인 | 회전부에 말림 위험 | | 조치사항 | 회전부에 방호커버 부착 | |
| 가능성(5) | 중대성(4) | 위험성 추정 | 가능성(5) | 중대성(4) | 위험성 추정 |
| 3 | 3 | 9 | 1 | 3 | 3 |

→ 구체적인 위험성 추정 방법은 '[부록] 위험성평가 적용 예시' 참고



4)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 ①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 X | X | X | X | O |
| ② 편성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 X | X | X | X | O |

■ 실태조사 현황

- (A사)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만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음
- (B사)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만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집행실태도 점검하지 않음
- (A, B, C, D사) 반복적인 사항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음(예 : 위탁기관 대행비, 작업환경측정, 보호구 등)
- (E사)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계정이 별도로 존재하며, 집행실태는 매년 점검함

■ 개선방안

- 예산 편성 시 안전보건 관련 항목을 별도로 관리하여 계획 대비 실적을 확인하는 것도 바람직
 - 반복적이고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이 외에도 안전보건 관련 조치(유해·위험요인 개선 등)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 확인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을 개선계획에 따라 일부분이라도 편성하고, 이에 대한 집행이력과 경영자 보고 후 기록 등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참고> 안전보건예산 편성항목 예시

1) 「고용노동부,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에 따른 항목

| | |
|--|---|
| - 설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비용(법적 요건) -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 안전진단 등 컨설팅 비용 | -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 작업환경 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비용 - 안전보건 우수사례 포상 비용 - 안전보건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등 지원 비용 등 |
|--|---|

(출처 :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고용노동부, 2020)

🔍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2)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 따른 항목

| | |
|---|---|
| - 안전보건 인력의 유지비 - 안전보건 조직운영비 - 안전보건 활동비 - 안전시설 및 보호장치 투자비 | - 교육비 - 건강진단, 건강관리비 - 작업환경측정비 - 기타 |
|---|---|

(출처 :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산재예방 지출 및 투자비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항목

| | |
|---|---|
| -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안전시설비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안전진단비 등 |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본사사용비 |
|---|---|

(출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2020)

○ <참고> 안전보건예산 분류 예시

<예시 1>

| 구분 | 대분류 | 내역 |
|----|---------|--|
| 1 | 시설/설비비 | 고위험 설비 방호장치, 안전설비 추가, 설비손상 점검 및 교체 |
| 2 | 운영비 |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개선, 근골격계질환 예방, 안전용품, 의약품, 포상, 캠페인 지원, 안전부서(인원확충 포함) 및 외주(방재센터 등) 인건비 |
| 3 | 시스템장비비 | EHS시스템 고도화, 상황전파시스템, 밀폐공간 모니터링 장비 등 |
| 4 | 컨설팅/진단비 | 안전보건 외부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공정안전관리 진단 |
| 5 | 교육훈련비 | 사외교육(안전리더십, 공정안전, 안전문화 등) |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예시 2>

| 구분 | 구분 | 내역 |
|----|--------------------------|---|
| 1 | 위험설비 정비 및 개·보수 | ①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대책사업비 ② 노후 설비 및 장비의 교체·보강, 작업장 환경개선비 ③ 청·관사 등 업무시설 유지관리비(시설관리용역 등 외주비 포함) |
| 2 | 안전사업비 및 안전관리비 | ① 안전사업비 ② 안전관리비 ③ 안전진단·점검, 안전검사, 각종 측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3 | 안전경영 및 안전시스템 등 지원예산 | ① 안전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②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운영 및 관련 평가 비용 ③ 안전관리 운영체계 관련 문서 등 개발 비용 |
| 4 | 안전 관련 물품 및 장비구입비 등 | ① 안전 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② 안전 관련 장비 등 |
| 5 | 안전 관련 교육·훈련·홍보 | ① 안전교육 및 훈련비 ② 안전 관련 행사추진 비용 등 홍보성 비용 |
| 6 | 안전 R&D | ① 안전 관련 신기술·신제품 개발 ② 안전 관련 연구개발(R&D) |
| 7 |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SOC 구축 및 관리 | ①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성 강화 사업 ②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각종예방·정비 사업관리 |
| 8 | 안전 전담인력 인건비 | ① 본사 및 사업소 등 안전업무 전담부서 인력의 인건비 ② 기타 안전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 |
| 9 | 기타 | ① 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 회의 등 운영 ② 화재보험, 안전 관련 회비 등 기타 경비 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 회의 등 운영 |

→ 예시내용을 참고하여 법령 준수를 위한 비용은 포함시키되, 사업장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시킬 필요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있습니까? | O | O | O | O | O |
| ②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X | X | X | X | X |
| ③ 평가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의 충실성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 X | X | X | X | X |

■ 실태조사 현황

- (A사) 전무이사가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어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도 대리수행 하고 있으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기준 및 관리절차는 없음
- (B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필요한 예산도 주어지고 있으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기준 및 관리절차는 없음
- (C, D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어 필요한 권한과 예산은 주어지고 있으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기준 및 관리절차는 없음
- (E사) 안전보건관련 예산이 안전보건담당자별로 연간 계획에 따라 투입되고 있으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기준 및 관리절차는 없음

■ 개선방안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 관리감독자(제16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62조)에 대한 업무를 반영하여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함
 - 회사의 핵심성과지표(KPI) 안전보건 관련 항목에 리더십 등을 추가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하고 관리해야 함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양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판정 | 비고 |
|------------------------------------|--------------------------------------|----|----|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산안법 제15조) |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 여부 | | |
| |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 여부 | | |
|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조) 여부 | | |
| |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여부 | | |
|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여부 | | |
|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 | | |
|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 여부 | | |
|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 여부 | | |
| | 위험성평가의 실시 여부 | | |
|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 여부 | | | |

○ <양식>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수행 평가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판정 | 비고 |
|--------------------------------|--|----|----|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산안법 제64조) | 위험성평가의 실시 여부 | | |
|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산안법 제51조, 제54조) 여부 | | |
| |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안법 제64조) 여부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여부 | | |
|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사용 여부 확인 | | |

○ <양식>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판정 | 비고 |
|------------------------|--|----|----|
| 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6조)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여부 | | |
|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여부 | | |
| | 해당 작업 발생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여부 | | |
|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여부 | | |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과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여부 | | |
| |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 참여 여부 | | |
| | 작업시작전 작동점검 등 안전점검 실시상태 여부 | | |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양식> 관리감독자 수행업무 세부기준

| 구분 | 점검내용 | 주요 점검 Point | 판정 | 비고 |
|-----------------------|---|--|----|----|
| 관 리 | 안전보건 교육 | 정기교육(관리감독자 교육이수 포함) 실시 및 기록 보존상태 | | |
| | | 신규채용시 안전교육 실시 및 기록 보존상태 | | |
| |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기록 보존상태 | | |
| | 보호구 | 적정 보호구의 지급, 착용, 보관 상태 | | |
| | 정리·정돈, 청결 | 작업장소의 정리·정돈 및 청결 유지 상태 | | |
| | 작업통로 | 작업통로 표시, 통로확보 상태 | | |
| | 안전표지 안전수칙 | 안전표지, 안전수칙 부착 및 청결 상태 | | |
| | 안전검사 | 설비의 안전검사 실시 및 검사필증 부착상태 | | |
| | 작업복장 | 지정된 복장의 올바른 착용 상태 | | |
| 산업재해분석 | 산업재해 발생상태 (재해자 : , 재해원인:) | | | |
| 기 계 · 설 비 | 위험기계·기구 | 공기압축기의 압력방출장치 기능 상태 | | |
| | |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부착상태 및 외관상태 | | |
| | | 작업시작전 작동점검 등 안전점검 실시상태 | | |
| | 일반기계 | 회전체 및 구동부분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안전덮개, 방호울, 방책, 난간대 등) | | |
| 운반대차 | 바퀴의 파손 등 이상유무 상태 | | | |
| 수공구, 작업용구 | 파손, 변형, 적합성 상태(수공구, 사다리, 작업발판, 와이어로프 등) | | | |
| 전 기 | 전기개폐기(차단기) | 절연성, 기기명 표시, 적합성 상태(누전차단기, 과전류차단기 등) | | |
| | 전기기구, 전선 | 절연, 단락, 파단, 변형, 적합성, 전선정리 상태 (콘센트, 플러그, 스위치, 전선 등) | | |
| | 전동공구 | 파손, 전선단락, 절연, 보관 상태 (핸드그라인더, 핸드드릴, 샌드 페이퍼 등) | | |
| 소 방 · 화 공 | 고압가스 | 전도방지조치, 게이지 파손, 호스 노후, 보관 상태 (LPG, 산소, 알곤, 탄산가스, 아세틸렌 등) | | |
| | 소화기, 소화전 | 소화전 : 노즐, 호스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소화기 : 충약, 충압, 보관장소, 점검 상태 | | |
| | 유해·위험 물질 | 경고표시, MSDS & GHS자료 비치·보관 상태 | | |
| 기 타 | 국소배기장치 | 파손, 탈락, 변형, 설치 위치, 흡입력 상태 | | |
| | 계단, 통로 | 난간대, 미끄럼 방지조치 상태 | | |
| | 원자재 및 제품 | 과적, 불균형 적재 상태 | | |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양식> 관리감독자 수행업무 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년 월 일 요일(날씨:) | | | | | | | | | | 결 | 담 | | | | | | | | | | | | | | | | | |
| 근로자 현황 | | | | | | | | | | 작업시간 | | | | | | | | | | | | | | | | | | |
| 공정명 | <input type="checkbox"/> 여성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년미만 미숙련자 <input type="checkbox"/> 고령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근로자 | | | | | | | | | 시작 ~ 종료 | 시 분 ~ 시 분 | | 교대작업 유무(유□, 무□) 특별안전보건교육(유□, 무□) | | | | | | | | | | | | | | | |
| 작업 인원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 | | | | | 유해위험물질 보유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험요인/전달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해자 현황 | 발생일 | 성명 | 성별 | 연령 | 발생시간 | 발생원인 | | | | 조치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 검 사 항 | | | | | | | | | | 범례 : 양호 :○ 미흡 :△ 불량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①기계기구 | | | | ② 전가화공 | | | | | ③ 환경시설물 | | | | | | ④ 작 업 자 | | | | | ⑤기타 | | | | | | | |
| | 1 | 2 | 3 | 4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6 | 1 | 2 | 3 | 4 | 5 | | | | | | | | |
| | 위험기계·기구의 상태 | 일반동력기계·기구의 상태 | 운반기계·기구의 상태 | 수공구의 보관·관리 상태 | 전기설비·배선 상태 | 기계기구의 접지 상태 | 유해물질의 취급·관리 상태 | 위험물질의 취급·관리 상태 | 가스류의 취급·관리 상태 | 정리정돈·청소·청결 상태 | 소음·분진·조명 등의 상태 | 건축구조물의 상태 | 소화시설의 상태 | 안전표지판의 관리 상태 | 적재물의 관리 상태 | 작업복장의 상태 | 보호구의 착용 상태 | 불안전행동의 여부 | 작업점과 신체 접촉 여부 | 불안전상태의 방치 여부 | | | | | | | | |
|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제점 | | | | | | | | | | | 개선 사항 | | | | | | | | | | | | | | | | | |
| 특이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안전보건관리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 ○ | ○ | ○ | ○ | ○ |
| ② 배치된 안전보건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 해당 없음 | 위탁 (해당 없음) | 위탁 (해당 없음) | 위탁 (해당 없음) | ○ |

■ 실태조사 현황

- (A사)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안전보건담당자를 선임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 (B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으나, 다른 업무의 겸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시간 보장이 미흡하며,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위탁하고 있음
- (C, D사)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자체 전담인원은 없음
 - 내부적으로는 전담인원이 부재하여,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역량은 미흡함
- (E사)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여 전담하도록 함

■ 개선방안

- 전담인원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분장표 등'을 통해 안전보건 업무수행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실제 업무수행 이력(일일 안전순찰 일지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안전관리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2. 위 최소시간에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로 하여야 함

(출처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정안, 고용노동부, 2021)

-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대행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적요건 및 위험요소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
- 여건이 된다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내부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참고>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 배치의무 완화

| 구분 | 주요 내용 |
|--------------|---|
| 기업의 자율고용 | 산업보건의 채용의무 완화(기업규모, 유사자격을 가진 자의 채용 등 조건 없음) |
| 공동채용 | 동일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은 300명 이내)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음 |
| 안전 관리자의 겸직허용 | (1) 아래 제시된 안전관리자 중 하나를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중 1명만 채용해도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 저장자 또는 고압가스 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
| | (2) 아래 제시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 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7.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안전관리직원 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 9.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구분 | 주요 내용 |
|---------------------|---|
| 보건 관리자의 겸직허용 | 아래 제시된 자를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중 1명만 채용해도 자의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 관리자 |
|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의무고용 완화 |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한 경우 채용 의무가 있는 아래 제시된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 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 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
| | (2)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 등 기업규제완화법 시행령 13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제시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중 1명만 채용해도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 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 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
| | (3) 제시된 안전관리자 중 1명만 채용해도 채용된 자에게 아래 안전관리자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면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 채용한 것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 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참고> 재해위험 높은 업종

| 대분류 | 세부업종 |
|-------------|--------------------|
| 광업 | 석회석(백운석, 대리석포함) 광업 |
| | 금속 광업 |
| | 쇄석 채취업 |
| | 기타 광물 채굴·채취업 |
| 제조업 | 섬유판 제조업 |
| | 철근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 | 석회 제조업 |
| |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 |
|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 |
| | 법랑철기 및 프레스 가공 제조업 |
| | 철강재 제조업 |
| | 제강압연업 |
| | 철강 및 합금철제품 제조업 |
| | 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 제조업 |
| | 각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 |
| | 시멘트 제조업 |
| | 비철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
| 지류가공제품 제조업 | |
| 건설업 | 건축 건설공사 |
| | 기타 건설공사 |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소형 화물 운수업 |
| | 퀵서비스업 |
| | 항만 운송 부대사업 |
| 기타의 사업 |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

(출처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정안, 고용노동부, 2021)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양식> 안전보건 전문인력 일지(1) (안전보건 업무 수행시간 증빙·보고용)

| 안전보건 활동 일지 | | 결재 | 담당 | | | |
|---------------|-----|----------|------|-----|------|------|
| | | | | | | |
| 년 월 일 ()요일 | | | | | | |
| No. | 시 간 | 지적사항(장소) | 개선방안 | 담당자 | 조치기한 | 조치확인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p>■ 특이사항</p> | | | | | | |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양식> 안전보건 전문인력 일지(2) (안전보건 업무 수행시간 증빙·보고용)

| () 월 작업장 순회 점검표 | | 부서/공정 | | | | | | |
|------------------|--------------------------|-------|---|---|----|---|---|----------|
| | | 주차 | | | 주차 | | | 업무 시간 |
| No | 점 검 사 항 | 월 | 수 | 금 | 월 | 수 | 금 | |
| 1 | 작업장 조명확보는 양호한가? | | | | | | | |
| 2 | 작업장내 안전통로는 확보되어 있는가? | | | | | | | |
| 3 | 원재료,제품 정리정돈은 양호한가? | | | | | | | |
| 4 | 바닥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가? | | | | | | | |
| 5 | 작업장내 작업공간은 충분한가? | | | | | | | |
| 6 | 작업자의 보호구착용은 양호한가? | | | | | | | |
| 7 | 중량물 취급작업은 양호한가? | | | | | | | |
| 8 | 작업장 환기상태는 양호한가? | | | | | | | |
| 9 | 출입구, 비상구 주변에 물건이 두고있는가? | | | | | | | |
| 10 | 소화기,소화전 비치.관리상태는 양호한가? | | | | | | | |
| 11 | 작업장내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 | | | | | | |
| 12 | 작업자는 무리한 동작을 취하지 않는가? | | | | | | | |
| 13 | 동력전달부 덮개 및 울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 | | | | | | |
| 14 | 방호장치의 설치 및 기능상태는 양호한가? | | | | | | | |
| 15 | 안전표지 및 안전수칙 게시상태는 양호한가? | | | | | | | |
| 특이사항 | | 조치결과 | | | | | | |
| | | | | | | | | |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 ① 안전·보건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제도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로 인정) | X | O | O | O | O |
| ② 절차에 따라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까? | X | O | O | O | O |
| ③ 의견청취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습니까? | X | O | O | O | O |
| ④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X | X | X | X | O |

■ 실태조사 현황

- (A사) 안전보건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B, C, D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D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
- (E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별도로 안전제안 활동을 통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 이행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협의체, 건설업 노사협의체 등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 절차에 따라 종사자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 산안법상 협의체 외에도, 안전제안, TBM(작업 전 안전미팅), 아차사고 발굴 등 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방법임
- 의견청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즉시 조치가 어려운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연간 안전보건 일정 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참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
|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 20.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양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20 년 제 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 | | | |
|--|-----|------|-------------|------|----|
| <input type="checkbox"/> 정기회의 <input type="checkbox"/> 임시회의 | | | | | |
| 위 원 장 : 회의일시 : 회의장소 : | | | | | |
| 참석자 | | | | | |
| 사용자위원 | | | 근로자위원 | | |
| 직위 | 성명 | 확인 | 직위 | 성명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의 결과 | | | | | |
| 연번 | 안건명 | 논의결과 | 담당부서 담당자 | 처리기한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20 년 월 일 | | | | | |
| 사용자위원 대표 | | | | (인) | |
| 근로자위원 대표 | | | | (인) | |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참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예시

| | | | |
|---------|-----------------------|------|-----------|
| [회사 CI]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 문서번호 | 000-000 |
| | | 시행일자 | 0000.0.0. |
| | | 개정번호 | |
| | | 페이지 | 0/0 |

| 제정/개정 이력사항 | | |
|------------|-------------|---------|
| 개정번호 | 제/개정 일자 | 제/개정 사유 |
| 0 | 0000.00.00. | 제정 |
| 1 | - | -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0000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과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올바른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노·사의 산업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도록 적극 노력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보건 업무의 우선 적용)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제규정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일 먼저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 인력 등을 타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자대표" 라 함은 과반수노조이거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운용 규정의 제·개정)

본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제·개정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제5조 (구성)

- ① 본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00인으로 구성한다.
(※ 도급사업 시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하는 경우 관련 구성방법 추가)
-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선출한다. 단,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선임된 경우 반드시 위원으로 선출한다(제1항 위원수에 포함).
-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이사)
 2. 안전관리자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3. 보건관리자
 4. 기타 사업주가 지명하는 부서의 장
- ④ 위원의 변경은 대표 위원이 위원의 변경 시 7일 이내에 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가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8조 (직무)

본 위원회는 사내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로서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은 1/4분기(2월), 3/4분기(8월)는 회사측이, 2/4분기(5월), 4/4분기(11월)는 조합측이 교대로 맡는다. 단, 미개최시 순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여 정기, 임시 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3. 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신분보장 및 활동보장)

1. 회사는 위원이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못하며 제8조에 정하는 직무수행과 조사 활동을 보장한다.
2.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주는 현장 점검활동 등을 통한 근로자의 요청 및 의견 취합, 회의를 위한 사전 안전준비, 근로자 위원간의 논의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산업안전보건 법과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의 조사를 위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4. 회사는 근로자측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5.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는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제시)

양측 위원이 회의 중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운영

제11조 (회의)

본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① 정기회의 :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 ② 임시회의
 1. 노·사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 개최한다.
 2. 중대 재해 발생 시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3. 재해 발생 및 재해 위험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 4. 위원장 및 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청 시

제12조 (회의소집 및 회의성립)

- (1)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 (2)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참석 인원 명단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지회에 통보하고 소집공고 게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당연직으로써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4) 회의 성립은 노·사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13조 (심의·의결 사항)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항을 심의, 의결하며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의결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1. 산업재해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
-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7. 안전보호장구 및 안전장비에 관한 사항
-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 9.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10. 산업재해 사후처리 문제(보상, 기타)에 관한 사항
- 1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수, 자격, 직무, 권한 등에 관한 사항
- 12.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13.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14.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15. 안전보건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 16.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 17.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법령이 정하는 사항 및 노·사 어느 일방이 요구하는 사항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사항

제14조 (의결)

위원회는 노·사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노·사 동수일 때는 재투표 후 양측 대표위원이 협의한다.

제15조 (부결 시 조치)

회사는 위원회 의안 부결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제16조 (참고인의 출석)

- ① 노·사 양측은 필요 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안전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출석을 요청 받은 참고인은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보고, 진술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록 작성 및 보존)

- ①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 위원의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갖는다.
 - 1. 개최 일시 및 장소
 - 2. 참고인의 직위 및 진술
 - 3. 회의 내용, 심의, 의결 사항
 - 4. 기타 토의 사항
-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제18조 (회의 결과 공지)

- ① 본 위원회는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기타 방법으로 전직원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 ② 회사측 대표위원은 심의, 의결사항 이행여부 등 추진상황을 반드시 차기회의에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9조 (회의 결과 보고)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할 경우 위원 전원의 확인 후 보고토록 한다.

제20조 (권한)

- ① 위원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나 유해한 작업환경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 ② 작업중지 조치를 취한 위원은 해당 부서 또는 회사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제21조 (기타)

이 규정은 202n년 01월 01일부로 시행한다.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 ①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등 대응 조치,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X | O | X | X | O |
| ②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까? | X | X | X | X | △ |

■ 실태조사 현황

- (A, C, D사) 사업장 내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추락, 붕괴, 화재, 폭발, 화학물질 누출, 밀폐 공간, 감전, 충돌 등)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대응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B사)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은 PSM 이행실태 관리방안에 수립되어 있으나, 반기별 1회 이상의 주기적인 점검은 수행하고 있지 않음
- (E사)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대응조치는 PSM 이행실태 관리방안에 수립되어 있으나, 연간 단위로 점검하고 있어 점검 주기(반기별 1회 이상)를 충족하지 못함

■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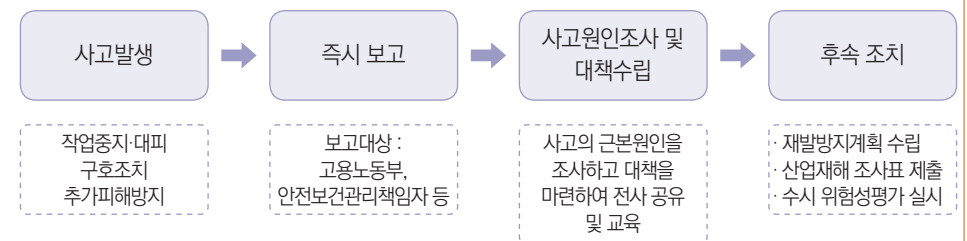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며,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 궁극적으로는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건 상 즉시 개선이 어려운 경우 대응 매뉴얼을 통해 위험요인을 강력하게 관리·통제할 필요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참고> 비상대응 매뉴얼 예시

| 구분 | 행동 및 조치절차 | 업무수행 |
|-------------|---|-------------|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 최초 발견자는 휴대폰, 무전기, 유선 이용해서 발생장소 및 환자상태를 소속 관리감독자(부서장)에게 신속히 연락한다. (비상연락망 공유 및 숙지 후 신속 연락) ▶ 인명피해, 화재 등 경우 119 등에 즉시 신고한다. | 최초 발견자 |
| 응급조치 | ▶ 지혈장비를 이용하여 부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 작업관리자 (작업자) |
| 사고현장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은 최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까지 그대로 보존한다. ▶ 2차 재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자 대피 등 위험원을 보호 조치하고,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 관리감독자 |
| 이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자는 즉시 이송한다. ▶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 119등에 요청하여 환자를 이송한다. | 관리감독자 |
| 사후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대상인 경우 관계기관 사고발생 보고(고용노동부 등) ▶ 사고대책반,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사고원인 및 보완사항 안전교육 ▶ 개인별 임무숙지, 응급처치의 적절성 보완 등 | 관리감독자 |

○ <참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 절차





9)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 X | X | X | X | O |
|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X | X | X | X | O |
| ③ 기준·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및 위탁이 이뤄지는지 반기 1회 점검하고 있습니까? | X | X | X | X | X |

■ 실태조사 현황

- (A, D사) 도급대상(식당)에 대한 산재예방을 위한 기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B사) 도급대상(식당 및 사내 협력업체 1개사)에 대한 산재예방을 위한 기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C사) 사내 도급이 없고, 관련 기준·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A, B, C, D사) 적격수급인 선정, 정보제공, 비용 기준 및 점검 등을 미 실시
- (E사) 사내 도급은 없으나, 협력업체 안전관리절차서에 따라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는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다만, 기준·절차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프로세스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개선방안

- 장비 유지, 보수 등 외부업체가 작업을 하는 경우, 적격수급업체 선정기준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작업계획(위험성 평가)을 수립하도록 하여 위험통제 방법을 확인 후 작업허가를 통해 안전한 작업이 이뤄지도록 관리해야함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양식>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평가일 : 20 . . .
 1차 평가자(담당) : (인)
 2차 확인자(팀장) : (인)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평가기준 | | | 평가점수 |
|----------------|-------|----------------------------|----|------|----|----|------|
| |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 일반원칙 | 원청과 협력업체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여부 | 5 | 5 | 3 | 1 | |
| | 계획수립 | 원청의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여부 | 10 | 10 | 5 | 1 | |
| | 관리시스템 | 인증서 보유 또는 안전보건체계 | 5 | 5 | 3 | 1 | |
| 실행수준 (40)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인증여부 또는 위험요인 평가수준 | 10 | 10 | 5 | 1 | |
| |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5 | 5 | 3 | 1 | |
| | 교육및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특별교육 포함) | 5 | 5 | 3 | 1 | |
| | 수행능력 | 작업에 대한 공사 수행실적 | 10 | 10 | 5 | 1 | |
| 운영관리 (20) | 기술인력 | 작업을 위한 자격보유, 기술인력 확보 | 10 | 10 | 5 | 1 | |
| | 연락체계 | 원청-협력업체간 신호체계, 연락체계 | 10 | 10 | 5 | 1 | |
| | 위험설비 | 유해·위험물질, 취급 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 5 | 5 | 3 | 1 | |
| 재해발생 (20) |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 | 5 | 5 | 3 | 1 | |
| | 산업재해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20 | 10 | 1 | |
| 총 점 | | | | | | | |
| 등급 판단 | | | | | | | |

※ 업체 평가등급 분류기준

• S급 : 90점 이상, • A등급 : 80~89점, • B등급 : 70~79점, • C등급 : 60~69점, • D등급 : 60점 미만

- 평가항목 4개 분류중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업체등급별 관리기준

| 구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 판단 결과 | 적합 (모든작업) | 적합 (화재폭발·밀폐작업) | 적합 (일반작업) | 부적합 | 부적합 |

- 위험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은 A등급 평가 이상 업체만 가능함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양식〉 평가기준 점수표

| 배점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점수 | | |
|----|-------|---------------------------|------------------------------|--------------------------|----------------|
| | | | 우수 | 보통 | 미흡 |
| 20 | 일반원칙 | 원청과 협력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여부 | 5 안전방침 부합됨 | 3 안전방침 보통 | 1 미흡/없음 |
| | 계획수립 | 원청의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여부 | 10 안전관리계획서 우수 | 5 안전관리계획서 보통 | 1 미흡/없음 |
| | 관리시스템 | 인증서 보유 안전보건 체계 | 5 인증보유 또는 체계 우수 | 3 안전보건 체계 보통 | 1 미흡/없음 |
| 40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인증여부 또는 위험요인 평가수준 | 10 위험성평가인증 보유 위험성 평가수준 우수 | 5 위험성 평가수준 보통 | 1 미흡/없음 |
| |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5 보호구 지급계획 우수 | 3 보호구 지급계획 보통 | 1 미흡/없음 |
| | 교육및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특별교육 포함) | 5 안전관리 계획수립 우수 | 3 안전관리 계획수립 보통 | 1 미흡/없음 |
| 20 | 수행능력 | 작업에 대한 공사 수행실적 | 10 수행실적(2건이상) 우수 | 5 수행실적(1건이상) 보통 | 1 미흡/없음 |
| | 기술인력 | 작업을 위한 자격보유, 기술인력 확보 | 10 자격보유, 기술인력 확보 우수 | 5 자격보유, 기술인력 확보 보통 | 1 미흡/없음 |
| | 연락체계 | 원청-협력업체간 신호체계, 연락체계 | 10 비상연락망 연락체계 우수 | 5 비상연락망 연락체계 보통 | 1 미흡/없음 |
| 20 | 위험설비 | 유해-위험물질, 취급 기구 설비 안전성 확인 | 5 위험 기계기구, 공도구 관리 우수 | 3 위험 기계기구, 공도구 관리 보통 | 1 미흡/없음 |
| |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 | 5 비상훈련 실시 비상대응계획 우수 | 3 비상훈련 실시 및 비상대응계획 보통 | 1 미흡/없음 |
| 20 | 산업재해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최근 3년간 산재사고 3건이하 | 10 최근 3년간 산재사고 6건이하 | 1 산재사고 6건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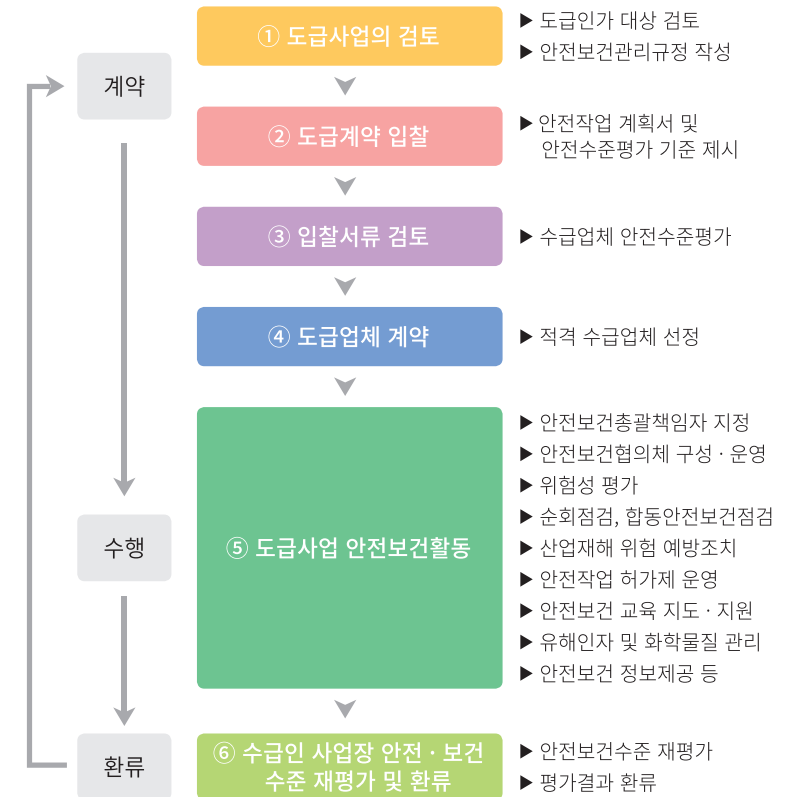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참고〉 적격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1 도급계약 입찰시 공지사항

도급사업 운영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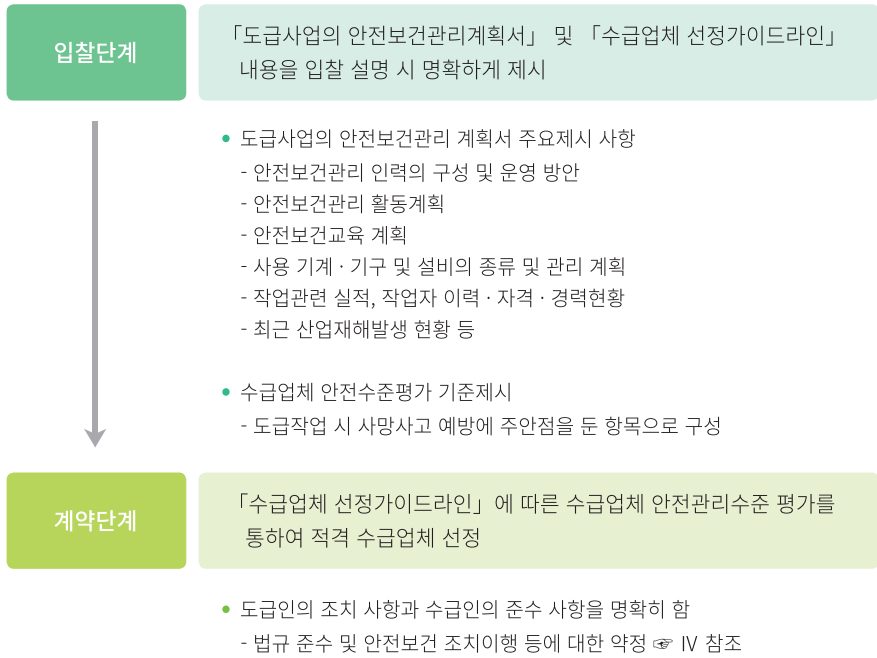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 관련 활동상황을 요구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2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안전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이며, 본 내용은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를 위한 “예시”로 작성됨

평가항목

-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안전수준평가 주요항목

| • 안전보건관리체제 | |
|---------------|--|
| 1. 일반원칙 | •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
| 2. 계획수립 | • 원청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하청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
| 3. 구조 및 책임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
| • 실행수준 | |
| 4. 위험성평가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 요인 평가수준 |
| 5.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 6. 이행확인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원청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7. 교육 및 기록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8. 안전작업허가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 • 운영관리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 원청 / 하청간 신호체계, 연락체계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 11. 비상대책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 재해발생 수준 | |
| 12. 산업재해 현황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원청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 도급인 단독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수준평가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 능력까지 포함한 종합평가방식을 고려

평가기준 및 배점

- ▶ 평가 항목별 평가 세부 기준 ㉞ 붙임1 참조
 - 정량적 평가점수 부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등의 분야에 속한 항목별로 세부 평가기준 구비
- ▶ 도급작업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수준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을 강조
 - 항목별로 정량적 평가 배점 부여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구조 및 책임(5)
- (실행수준 : 40점)
 -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10)
- (운영관리 :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10), 위험물질 및 설비(5), 비상대책(5)
- (재해발생수준 : 20점)

3 선정기준 및 환류

평가결과 적용방법

➔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 등급 | 득 점 | 이 행 수 준 |
|----|--------|----------------------------|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 |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등급제한 : 평가항목의 4개 분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의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제외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 및 환류

☞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수급업체 스스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토록 관리

-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포상 또는 도급 계약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
- ➔ 평가를 통해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과 문제점 도출이 가능하며, 평가결과를 수급 사업장 지원방안 수립에 활용

사례 : 안전보건환경관리능력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 선정(S사)

- 하청업체별 안전보건환경 관리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수급업체는 탈락
 - 평가항목은 안전보건환경경영체계/이행성 평가 및 실적평가로 구성 (7개 분야, 23개 항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시 가점 부여

➔ 원·하도급 간 상생체계 구축

- 도급인의 지원 활동을 능동적이고 명확히 하여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 배양

➔ 안전수준평가 결과를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수급업체에서 자발적, 점진적인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

➔ 수급업체의 안전수준의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원청에서 수급업체 지원 필요 사항을 도급작업 전에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반영

(출처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고용노동부, 2019)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참고> 안전수준평가 세부기준

I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업장명:

| 구 분 | 배점 | 득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 1. 일반원칙 | ●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 5 | |
| 2. 계획수립 | ● 원청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하청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 10 | |
| 3. 구조 및 책임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 5 |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 4. 위험성평가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 5.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
| 6. 이행확인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원청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 | |
| 7. 교육 및 기록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8. 안전작업허가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 원청 / 하청간 신호체계, 연락체계 | 10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
| 11. 비상대책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12. 산업재해 현황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II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 1. 일반원칙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 5 | 3 | 1 |

- ① 우수
 -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음
 -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하청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② 보통: 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하청사업주의 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위의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 2. 계획수립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원청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하청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 10 | 5 | 1 |

- ① 우수
 - 원청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하청의 이행계획에는 원청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② 보통: 원청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3. 구조 및 책임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3 | 1 |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하청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토록 함

② 보통: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원청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하청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방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5. 안전점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원청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원청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이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작업개시전임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7. 교육 및 기록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 원청의 안전작업허가 비대상 작업에서 자체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수립되거나, 원청의 안전작업허가 확인자 및 관리감독자의 현장배치가 없는 경우 작업중지 운영방안이 있는 경우
- ② 보통: 원청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③ 미흡: 원청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원청·하청업체간 신호체계, 연락체계 | 10 | 5 | 1 |

-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원청과 하청업체 및 하청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하청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3 | 1 |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원청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원청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 등이 불분명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11. 비상대책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3 | 1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출처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고용노동부, 2019)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 ① 재해 발생 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 X | X | O | O | O |
| ②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 X | X | O | O | O |

■ 실태조사 현황

- (A사)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B사)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음
- (C, D사) 사고(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 보고서를 통해 원인파악 및 개선대책을 수립, 실시하고 있음
 - 다만, 수시 위험성평가를 통한 위험요인의 재평가 및 개선 이후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
- (E사)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은 PSM에 반영되어 있으며, 공정 위험성평가, JSA, HAZOP(LOPA) 등을 활용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재평가도 실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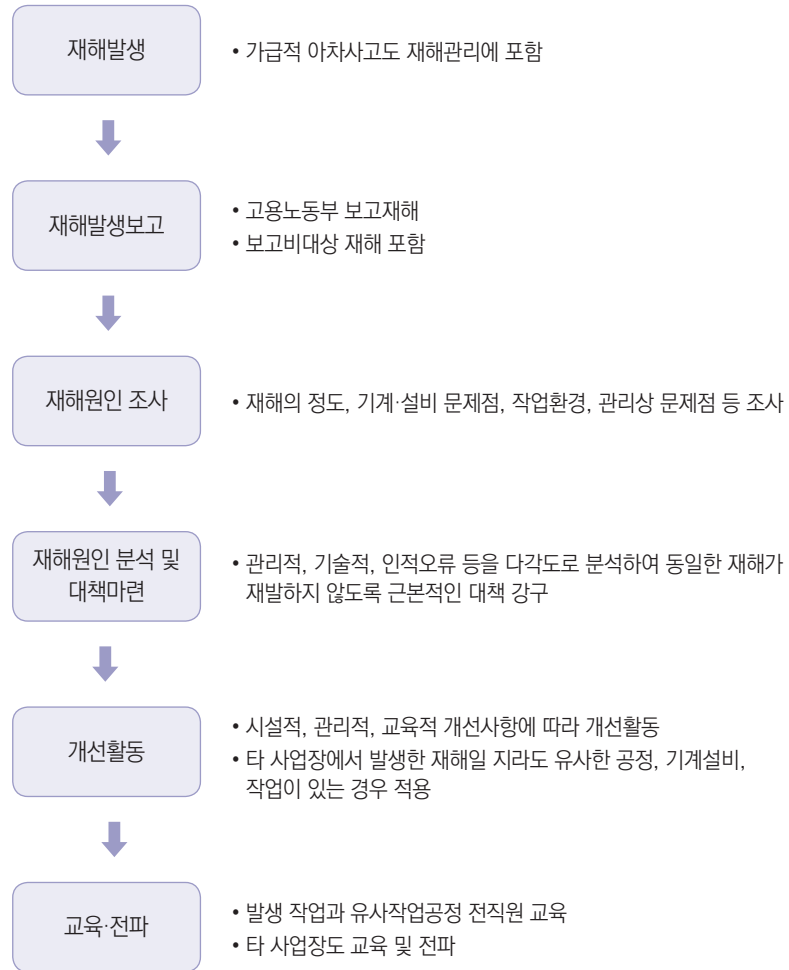
■ 개선방안

- 재해조사표 작성 대상인 사고(재해) 이외에도, 아차사고 등 경미한 재해도 적극 확인할 필요
- 파악된 사고사례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재평가 및 개선효과 확인이 필요함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참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절차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양식> 산업재해조사표

| | | | | |
|-----------|------------------------------|----------------------------------|-----------------|-----------------------------------|
| I. 사업장 정보 |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②사업장명 | ③근로자 수 | | |
| | ④업종 | 소재지 | (-) |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 (건설업 제외) | 원도급인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 건설업만 작성 | 발주자 | [] 민간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 |
| | ⑦원수급 사업장명 | | | 공사현장 명 |
| |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 | |
| | ⑨공사종류 | 공정률 | % | 공사금액 백만원 |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 | | | | |
|-----------|--------------|---|---------------|-------------|
| II. 재해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성별 | [] 남 [] 여 |
| | 주소 | | | 휴대전화 - - |
| | 국적 |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 ⑩체류자격: | ⑪직업 |
| | 입사일 | 년 월 일 |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 년 월 |
| | ⑬고용형태 |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 |
| | ⑭근무형태 |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 |
| | ⑮상해 종류 (질병명) | ⑯상해부위 (질병부위) | ⑰휴업예상 일수 | 휴업 [] 일 |
| | | 사망 여부 | [] 사망 | |

| | | |
|--------------------|------------|--------------------------------|
| III.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 ⑱ 발생일시 | []년 []월 []일 []요일 []시 []분 |
| | 재해 발생 장소 | |
| | 재해관련 작업유형 | |
| | 재해발생 당시 상황 | |
| | ⑲ 재해발생원인 | |

| | | |
|--------------|--|---|
| IV. 재발 방지 계획 | <p>※ ⑳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p> <p>※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금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p> | <p>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p> <p>산재보험금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p> |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사업주
근로자대표(재해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양식>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 제2쪽의 작성 요령을 읽고, 아래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제1쪽)

Ⅰ. 도급인 사업장 정보

| ① 사업장 명 | ② 사업자 등록번호 | ③ 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 개시번호 | 사업장 소재지 | ④ 근로자 수 | ⑤ 재해 현황 | | | | ⑥ 업종 |
|---------|------------|------------|---------|---------|---------|---------|---------|-----------------|-----------------|------|
| | | | | | | 사고사망자 수 | 질병사망자 수 | 사고재해자 수 (사망 포함) | 질병재해자 수 (사망 포함) | |
| | | | | | | | | | | |

Ⅱ. 수급인 사업장 정보

| ⑦ 사업장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⑧ 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 개시번호 | 사업장 소재지 | ⑨ 근로자 수 | ⑩ 재해 현황 | | | |
|---------|----------|------------|---------|---------|---------|----------|----------|------------------|------------------|
| | | | | | | 사고 사망자 수 | 질병 사망자 수 | 사고 재해자 수 (사망 포함) | 질병 재해자 수 (사망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⑪합계 | 총 () 개소 | | | | 명 | 명 | 명 | 명 | 명 |

Ⅲ.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정보

| | | |
|-------------------------|-----------------------|--------------------|
| ⑫ 도급인·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 ⑬ 도급인·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 | ⑭ 도급인·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 |
| 명 | 명 | 명 |
| ⑮ 도급인·수급인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 ⑯ 도급인·수급인 통합 산업재해율(%) | |
| ‰ | % | |

작성자 소속 및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원도급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지)청장 귀하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3. 행정기관 명령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 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을 명령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 해당 없음 | 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0 |

■ 실태조사 현황

- (A, C, D사) 개선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 없음
- (B사) PSM M등급 사업장으로 2021.08 안전진단명령을 받아 안전진단을 수행
- (E사) 개선이나 시정을 명령한 경우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

■ 개선방안

- 시정명령은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조치 사례가 없도록 적극 이행해야 함
-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부적합 사례에 대한 개선은 확인된 개소 외에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사례에 대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정명령 예시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 건설물 및 기계·기구·설비·원재료(이하 “기계·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양식> 행정기관 시정사항 이행관리 대장

| 점검일 | 행정 관서명 | 시정내용 | 시정 지시일 | 조치내용 | 조치일자 | 관공서 보고 일자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산업안전보건법 위주로 이행여부 점검)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 △ | O | X | △ | O |
| ②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까? (전문기관 위탁·점검 인정) | X | X | X | X | X |
| ③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까? | X | X | X | X | O |
| ④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X | X | X | X | O |

■ 실태조사 현황

- 대부분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해 인지 및 이해 부족으로 의무 이행이 미흡한 실정이며,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점검하고 있음
- (A, C사) 법령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인지부족으로 법규 이행 수준이 미흡하며, 법령 이행실태에 대한 보고체계 수립 및 점검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B, D사) 법령 전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법령 이행실태에 대한 보고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도 수행하지 않음
- (E사) 안전보건관계 법령 전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도 하고 있으나, 연간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점검주기(반기 1회 이상)를 충족하지 못함

■ 개선방안

- 주기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위험성평가, 교육 등)은 기본적으로 실시할 필요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는 우선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에 반영·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주기적으로 자체 또는 위탁 점검을 통해 법령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보고 및 조치하고 관련 자료를 기록·관리해야 함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참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고용노동부 해설서)

| 법령명 | 관련 조문 |
|-------------------|---|
| 산업안전보건법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을 모두 포함 |
| 광산안전법 | 법을 제정 목적에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포함하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법 제5조), 안전교육의 실시(법 제7조), 안전규정의 제정 및 준수(법 제11조) 등에서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내용 규율 |
| 원자력안전법 |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로 방사선작업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 부과(법 제59조의2), 방사선장해방지조치(법 제91조) 등 |
| 항공안전법 |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의무 적용이 제외된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
| 선박안전법 |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의무 적용이 제외된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률 | 법을 제정 목적에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포함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구실책임자의 지정(법 제9조), 안전점검(법 제14조) 및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법 제15조), 교육·훈련(제20조) 및 건강검진(제21조) 등의 사항을 규정 |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의 보호 조항(법 제14조의5)에 따라 시행규칙 제16조의3으로 정해진 보호장구의 지급, 운전자 포함 3명 1조의 작업 등의 안전기준 등 |
|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보호 조항(법 제36조)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
| 선원법 |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지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등 선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법 제82조), 의사의 승무(법 제84조) 등 규정을 포함 |
|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관련 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시설 및 종사자의 피폭량 등에 대한 조사 등 준수사항(법 제14조),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법 제16조) 등을 규정 |

(출처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고용노동부, 2021)

2)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의무 이행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 △ | ○ | △ | △ | ○ |
|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점검하고 있습니까? | X | X | X | X | ○ |
| ③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까? | X | X | X | X | ○ |
| ④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는 교육에 대해 지체없이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 | ○ | △ | △ | ○ |

■ 실태조사 현황

- (A, C, D사) 정기교육은 준수하고 있으나, 특별교육은 실시하지 않음
 - 밀폐공간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파악하지 못해 교육과정과 교육인원이 누락되고 있는 실정임
- (B사)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실시자 발생 시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기적인 점검을 이행하지는 않고 있음
- (E사)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점검 이후 지체없이 결과를 보고하며, 미실시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교육을 실시함

■ 개선방안

-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 적절히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함
 - 특별교육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상 대상 작업 여부인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
 - 안전보건 관련 인원 및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과 전문화 교육도 실시할 필요
- 교육결과(일지)는 인사기록과 일치시켜 기록·관리해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자료, 예산 확보 지시 자료 등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대상 작업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경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 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숲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 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등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 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 크리트 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6. 로봇작업
37. 석면해체·제거작업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양식〉 안전보건교육 일지

| | | | | | | | |
|---------------|---|----|----|--|----------|--|----|
| 교육일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 | | | | |
| 교육구분 | 1. 신규채용자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이상) 3. 특별교육(16시간이상) 4. 관리감독자 교육(년간 16시간이상) 5. 근로자 정기교육(생산직 :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 매분기 1시간이상) 6. 기타() 교육 | | | | | | |
| 교육인원 | 구분 | 계 | | | 비고 | | |
| | 교육대상 근로자수 | | | | | | |
| 교육자료 | 교안 | | TP | | 시청각 | | 기타 |
| 교육목적 | | | | | | | |
| 교육내용 | | | | | | | |
| 교육실시자 및 장소 | 성명 | 직명 | | | 교육 실시 장소 | | |
| | | | | | | | |
| 교육평가 및 의견 | | | | | | | |
| 특이사항 | | | | | | | |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양식〉 연간 교육 계획(안)

| 교육구분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교육일자 | 교육시간 | 교육대상 | 비고 |
|--------------------|--|-----------------------------|-------------------|---|-----------|----------------------|
| 정기 교육 | 1월 동절기재해 예방대책 | 강의식 시청각외 | | 2시간 | 전직원 | 교육 내용 변경 가능 |
| | 2월 화학물질의 위험성 및 유해성에 대한 이해 | | | 2시간 | 전직원 | |
| | 3월 보호구착용 및 관리요령 | | | 2시간 | 전직원 | |
| | 4월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 | | 2시간 | 전직원 | |
| | 5월 감전재해 예방 | | | 2시간 | 전직원 | |
| | 6월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및 대책 | | | 2시간 | 전직원 | |
| | 7월 하절기 안전사고 예방대책 | | | 2시간 | 전직원 | |
| | 8월 화기작업안전 및 밀폐공간작업안전 | | | 2시간 | 전직원 | |
| | 9월 기계의 위험성 및 안전대책 | | | 2시간 | 전직원 | |
| | 10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 2시간 | 전직원 | |
| | 11월 차량계 운반기계의 위험 및 예방대책 | | | 2시간 | 전직원 | |
| | 12월 건강증진 및 뇌심혈관질환예방 | | | 2시간 | 전직원 | |
| 채용시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설비, 기계및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 ·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강의식 시청각외 | 채용후 | 8시간 | 채용 |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설비, 기계및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 ·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강의식 시청각외 | 작업 배치 전 | 2시간 | 변경 | |
| 특별 안전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는 특별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 교육 실시 • 주물및단조작업, 로봇작업, 맨홀작업, 밀폐공간 작업, 허가 및 관리대상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등 40개의 작업 (산업법 시행규칙 [별표5]) | 강의식 시청각외 | 작업 배치 전 | 16시간 (배치전 4시간 실시 후 3개월 이내12시간 실시) | 해당 작업자 | |
|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 외부집체 교육 | 안전보건 공단의 일정 | 6시간이상 | 선임자 | |



5. 문서보관

| 진단사항 | 진단결과 | | | | |
|--|------|----|----|----|----|
|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4조 | △ | ○ | △ | △ | △ |
| ②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5조 | △ | ○ | △ | △ | ○ |

■ 실태조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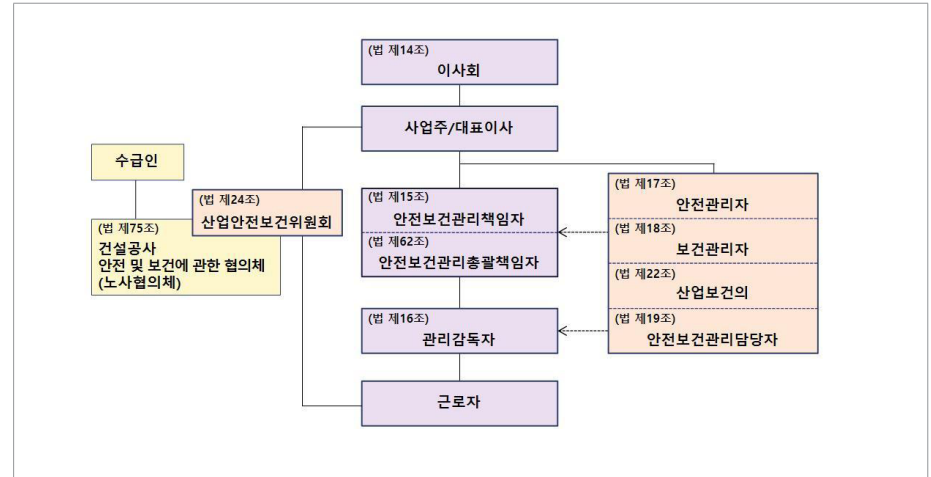
- (A사) 관련 내용을 문서화 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움
- (B사) 관련 내용을 문서화 하여 5년간 보관하고 있음
- (C, D사) 일부 자료 외에는 문서화 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음
- (E사) 문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내부규정에 따라 5년간 보관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실태 문서는 내부규정 상 대부분 5년간 보관하고 있음

■ 개선방안

- 각종 의무에 따라 마련된 절차, 매뉴얼, 안전보건담당자 선임계 등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관련 반기별 점검·평가 결과, 경영책임자 보고자료, 예산집행 등 필요한 조치 지시 내용 등을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함
- 관련 문서를 5년간 보관토록 내부규정상 문서 보존기간을 개정할 필요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양식>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 <양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계(지정·임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

직 급 : .
성 명 :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 법령상 직무 내용 기입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20 년 월 일
0000 대표이사: (인)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양식> 관리감독자 등 연명부

(관리감독자) 연명부

| 순번 |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상기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작업지휘자) 연명부

| 순번 |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상기인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9)조의 (작업지휘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참고>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

| 작업종류 | 관련근거 | 비고 |
|--|---------------------|---|
| 1)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제39조 1항 (제38조 2호) | 작업 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 제39조 1항 (제38조 6호) | |
| 3) 교량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해체 또는 변경 작업 | 제39조 1항 (제38조 8호) | |
| 4) 채석작업 | 제39조 1항 (제38조 9호) | |
| 5) 건물 등의 해체작업 | 제39조 1항 (제38조 10호) | |
| 6) 중량물 취급 작업 | 제39조 1항 (제38조제 11호) | |
| 7) 향타기나 향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 제39조 제2항 | |

○ <양식> 반기별 이행 점검 사항

| 점검 사항 | 점검결과 (이행 여부) | 개선요망 사항 | 이행확인 |
|--|--------------|---------|------|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시행령 제4조제3호) |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지원 (시행령 제4조제5호) | | | |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시행령 제4조제7호) | | | |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시행령 제4조제8호) | | | |
|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절차 마련 (시행령 제4조제9호) | | | |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 | | |
|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이행 (시행령 제4조제9호) | | | |

참고사항 및 예시(양식)

○ <양식> 보호구 지급대장

| 번호 | 지급 일자 | 부서 | 성명 | 종류 | | | 서명 |
|----|-------|----|----|-----|-------|-------|----|
| | | | | 귀마개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
| | | | | | | | |
| | | | | | | | |

○ <양식> 순회점검 일지

| 작업명 | | | | | |
|-----------------|---|------|----|---------|-------|
| 작업장소 | | | | 작업업체명 | |
| 점검일시 | 20 년 월 일 ()요일 | | | 점검자 | (인) |
| 구분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 개선요망 사항 | 이행 확인 |
| | | 양호 | 불량 | | |
| 개인 보호구 | •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호흡보호구 등) | | | | |
| 감전 재해 예방 | • 분전반 관리상태 (우수침투방지, 누전차단기작동, 시건장치, 접지 등) | | | | |
| | • 기계·기구장치 상태(파손, 접지설치, 보호장치) (투광등, 양수기, 바이브레이터, 그라인더, 절단기 등) | | | | |
| | • 이동전선의 피복손상 및 유지 관리상태 | | | | |
| 추락 재해 예방 | • 추락방지 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추락방지망 등) | | | | |
| | • 작업대 및 이동식비계 설치 및 관리상태 (안전난간, 승강설비, 전도방지, 유동방지 등) | | | | |
| 건설 기계 | • 양중장비(이동식 크레인, 승강기 등) (와이어로프, 전담신호수, 매달기적정, 표지판 등) | | | | |
| | • 굴삭기(접근금지, 전담신호수, 주용도 외 사용금지 등) | | | | |
| 보건 | • 유해인자 취급자 보호구 착용상태 (방독면, 방진마스크, 귀마개 등) | | | | |
| | • 취급물질별 MSDS 교육상태 | | | | |
| | •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상태 | | | | |
| 기타 | • 위험물(인화성 물질 등) 관리상태 | | | | |
| | • 위험, 주의, 경고 등 표지판 설치 상태 | | | | |
| | • 자재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상태 | | | | |
| <p>■ 특이사항 :</p> | | | | |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진단 매뉴얼

| | |
|-----------|----------------|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 태 희 |
| 발행 | 행 중소기업중앙회 |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
| 인쇄일 | 2021년 12월 27일 |
| 발행일 | 2021년 12월 31일 |
| 인쇄 | 디자인영 |

〈비매품〉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124-3273 / 팩스 02-786-1892